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일본편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가이드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79-01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일본편



목·차

I.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 내용	7
II. 한국과 일본간 거래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9
III. 계약서의 작성 방법	13
IV. 표준계약서	37
1. 표준 구매계약서(국문)	38
2. 표준 구매계약서(영문)	48
3. 표준 구매계약서(일문)	61
4. 계속적 매매계약서(계약서 사례)	71
5. 계속적 매매계약서(계약서 표준례)	102

I.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 내용

상품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 상품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인도하고, 그 상품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국가간에 상품을 사고 파는 상품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품매매계약 외에도 운송계약, 보험계약, 은행과의 외환거래 약정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들 계약에 관한 이해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목적을 넘어서므로, 여기에서는 상품거래에 관한 매매계약만을 다루기로 합니다.

한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필연적으로 준거법의 선정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관련 국가의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도, 관련 국가의 강행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관련 국가의 법령의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II. 한국과 일본간 거래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는 1980년 제정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비엔나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 3. 1. 자로, 일본에서는 2009. 8. 1. 자로 각각 CISG 협약이 국내법으로 발효되었으므로 한국과 일본 간의 물품매매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CISG가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ISG는 임의규정으로서, CISG 제6조는 “당사자는 CISG의 전제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규정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CISG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CISG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CISG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2. INCOTERMS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란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국제 관행을 기초로 하여 만든 해석규칙입니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해석규칙의 일종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이를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을 관련 계약서에 원용함으로써 해당 계약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Incoterms는 최근 2010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는 위 개정 전의 규칙(예컨대 Incoterms 2000)에 따르는 것도 가

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FOB, CIF 등의 인도조건과 관련하여 Incoterms의 해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한국/일본의 민법, 상법 등 국내 법률

국제거래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준거법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국내법에 따른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와 같이 준거법을 계약서에 정해 둔 경우에, 그 해당 국가의 국내법률이 계약조항의 해석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체로 유사한 민사법상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되는 법률의 차이점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그다지 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조건이나 계약서 형식 등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법률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거래와 관련한 인허가 등 직접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규율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영역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출이나 특정 물품의 수출의 경우에 경제산업성의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를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문서 등 증빙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Ⅲ. 계약서의 작성 방법

1. 국제계약의 구조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표준계약서는 영미법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국제계약서는 주로 계약의 표제와 전문으로 구성되는 서두 부분, 계약서의 주된 내용인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계약 자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문 부분, 그리고 맺음말과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포함하는 말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형식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 법률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영문 계약서의 표준 구조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2.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완전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별첨과 더불어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위 목적과 관련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모든 과거 및 현재의 진술, 논의, 협의, 이해 및 합의를 대체한다.

매매계약에 어떤 합의사항이 기재되는지는 모든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당사자 각자의 교섭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국제계약에 있어서도 구두로 된 합의/계약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합의나 규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정형화된 서면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서에 명문으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나, 이에 반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조항(완전합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수 차례에 걸쳐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합의가 가장 우선하는지에 관하여도 관련 계약서에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

본 계약은 본 계약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본 계약의 양 당사자들의 명의로 체결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당사자간에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한 경우에만 계약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계약 당사자

본 구매계약(본 “계약”)은 ____년 ____월 ____일 (“발효일”) ____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국 법인인 ____ (“구매자”)와 ____에 그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 법인인 ____ (“공급자”) 간에 체결한다.

1) 계약 당사자 정보의 중요성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효력에 구속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서의 상호 연락,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필수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일본 기업의 특징

일본은 비교적 보수적인 기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신용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기간이나 상

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거래조건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접촉 초기단계에서는 이미 상대방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소개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첫 상담에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려 하기보다는, 신뢰와 안정감이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인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일단 기업간의 거래선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신뢰관계를 허물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중단되는 일은 많지 않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거래를 시작할 때 전화나 구두 등에 의한 협의를 거치고 나서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작성하더라도 거래 조건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나 주요조건을 모두 기재해 두지 않는다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협의 과정에 관한 문서를 남겨 두는 등 가능한 한 계약을 서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 일본 기업과의 거래관계 형성

일본에 진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해당 사업분야에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발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시장을 이해하고 현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 후 현지에서 동종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경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전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업체를 조사하고 접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지에서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직접 담당자를 발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대방과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를 통하여 소개받는 편이 거래선과의 안정적인 접촉을 통하여 보다 신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업종별로 수많은 조합, 협회가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해당 조합 또는 협회가 결성되어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유통·거래 경로의 모색 또한 고려해 볼 만 합니다.

4. 계약의 적용 지역

판매권 부여.

1. 공급자는 계약제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배타적,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계약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매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乙로부터 공급받은 계약제품을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국외에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사자 일방이 본 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사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40%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외 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독점권(Exclusive Right)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권에는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독점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독점권은 한 번 결정되면 장기간 유효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지역 독점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체결한다면 그 지역 제한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 충분히 협상을 거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물품의 판매지역을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해당 국가 내 판매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구매자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하더라도 매도인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거래 상대방으

로 하여금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 외에도 해당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한 판매권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적 판매계약이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우월한 지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본에서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되거나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세심한 법률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5. 물건의 수량, 종류 및 가격

물건의 종류, 수량은 분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상품과 구별이 가능한 특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물품을 종합하여 거래의 대상 상품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상품 전체를 추상적인 용어로 뭉뚱그려 집합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별지 등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물품 전부를 기재한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물건의 종류에는 정확한 명칭, 모델명, 사양 등 상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 방식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사양과 규격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대상 물품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이해 차이로 인한 분쟁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격은 개별 물품의 단가와 수량, 전체 물품의 가격 합계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의 거래 수량에 따라 개별 물품의 단가에 다소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를 계약 조항에 분명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계약.

1. 개별 계약의 성립

(a) 공급자 및 구매자가 협의하여 정한 개별 계약에는, 수요에 따라서 발주 및 지급재료, 대여설비 등의 수량, 납기, 단가, 지불기일, 납입장소 그 외 필요항목을 정한다.

(b)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주문서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개별 계약의 신청을 이행하고, 주문서는 갑이 정한 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고 공급자는 서면으로 승낙을 이행하는 것으로써 성립된다.

(c) 공급자는 구매자가 주문서를 발행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개별 계약의 내용을 정한다. 공급자가 위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문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계약과 개별 계약의 관계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개별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개별 계약 및 본 계약의 조항에 따른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본 계약 내용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기로 한다.

3. 개별 계약의 변경

개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며,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거래 상대방과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번 거래 시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번거로우므로 대상물품의 종류와 규격, 가격 등 모든 거래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계약을 체결해 두고서, 개별 거래에 있어서는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P/O, Purchase Order)의 발행으로 개별 계약의 체결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물품의 명칭, 모델명, 종류, 규격 및 사양 등은 기본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하여 두어야 합니다.

세금.

구매자와 공급자가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경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등 일체의 세금에 대한 납부책임을 진다.

물품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상호 합의를 거쳐 그 부담까지 반영하여 최종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의 부담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물건의 품질에 대한 약정품질 및 수령.

1. 구매자는 제품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본건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2. 본건 제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부적합 통지가 공급자에게 도달하고 또한 당해 부적합 제품이 그와 같은 통지일부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건 제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부적합 통지의 수령시, 공급자는 신속하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 부적합 통지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4. 구매자가 상술한 120일의 기간 이내에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부적합 제품을 모든 면에서 제품목록에 부합하는 대체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단, 공급자가 상술한 바에 따라 부적합 통지 수령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한 제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취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구매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구매주문이 취소된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은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품보증.

1.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본건 제품에 대하여 인도된 날부터 3년의 기간(“보증기간”) 동안 품질보증(“제품보증”)을 제공한다. 본 계약에 의한 제품보증은 공급된 본건 제품 및 공급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조달한 본건 제품의 자재, 부품 및 부속품이 (a)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품이며 구매자에게 만족스럽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이고 설계 오류, 조악한 자재, 조잡한 기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을 비롯한 어떠한 결함도 없는 상태이며, (b) 최고급품이고 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며, (c) 제품목록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보증을 포함한다.
2. 공급자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본건 제품의 자재 및 기술상의 결함 일체를,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체 없이 수리 또는 교체한다.
3. 보증기간 중 또는 보증기간 후에 발견된 하자가 본건 제품의 특정 인도분의 1%를 초과하는 제품에서 발견되고, 그 하자가 공급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인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본건 제품이 본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본건 제품에 하자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해당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포함함)를 취한다. 구매자가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급자가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본 계약상 구매자의 다른 권리에 대한 제한 없이,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모든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구매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3항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하자를 수리하거나 또는 제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일체를 구매자에게 배상한다.

1) 물건의 품질

(a) 물건 품질의 약정

거래물품의 품질에 대한 보장은 거래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거래 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최고급품으로서의 품질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중등품으로서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품질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격, 재질, 강도, 색상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판매된 제품이 이와 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구체화된 품질 기준은 거래 물품의 종류,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 ·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해 두어야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b) 품질의 기준

품질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일본 양국의 정부 또는 품질안전관리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조건으로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일본 경제산업성의 JIS인증 등 인증을 취득하거나 각종 물품별 품질관리기구로부터 품질검사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c) 오차 범위내의 품질 미달

대량으로 판매/구매되는 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거래의 특성상 대상 제품이 모두 완벽한 품질을 갖추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품질의 오차가 그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품질 미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 품질검사 기간 및 방식

품질검사기간.

1.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을 실제 인도받은 시점에 주문내용에 따라 상품의 과부족, 상품의 일치, 눈에 명백한 오손 및 파손 여부를 검사하여 주문 내용과 상충이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이 인도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갑”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협의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이 대체품을 납입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갑”은 원래의 납기일이 지나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지연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3. “갑”이 “을”과의 협의 하에 대체품을 납입하기로 한 기한 내에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그 부분에 관하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갑”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국제거래계약에서는 물건의 품질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책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전제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조 하에 품질을 검사하는 공정을 마련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기준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 미달의 경우 매수인은 물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된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품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품질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검사하는 방법, 매도인의 입회 하에 매수인이 검사하는 방법, 품질인증기관 등 제3자가 검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품질검사의 시기에 있어서도 물건 인도 후 즉시 검사하는 방법, 물건 인도 후 7일 이내에 검사하는 방법 등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인도시로부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품질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

므로 품질 검사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보통인데, 제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7일~10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계약상 보장된 품질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제품의 종류, 성질, 시장에서의 일반적 관행 등에 비추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품의 특성상 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클레임 기간을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정해둔 양식의 서면을 통한 전형적 절차에 따라서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정한 품질검사기간 또는 클레임 제기기간을 도과하도록 품질검사를 게을리 하거나 클레임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거래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합치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거래관계상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7. 물건의 포장

포장.

포장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만약, 매수인이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동 지시를 따르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적절한 시간을 두고 매도인에게 통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포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표준에 따라야 하며, 통상 공급자가 포장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인도기간 및 방식

인도.

본건 제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본건 제품이 인도되었을 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본건 제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따른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보험.

CIF조건일 경우, 매도인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를 부보하고, 매수인이 요청하는 추가보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보험은 해상보험만 FPA 또는 ICC (c) 조항에 따라 커버한다.

국제거래계약에 있어서 물건 인도시기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국가간 운송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자를 완벽히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운송수단, 국가간의 거리, 물품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도 방식에 있어서는 계약서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세부적인 조항을 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Incoterms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인도조건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10에서는 C, D, E, F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총 13가지의 인도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F.O.B. 인도조건과 C.I.F. 인도조건이 주로 실무상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만 설명하기로 합니다.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물품이 적재되면 인도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인도조건입니다. 물품의 위험이전 시기는 물품이 지정선적항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로 보며,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수출통관의무를 부담하고 매

수인은 수입통관의무를 부담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물품이 적재되면 인도가 완성된 것으로 보되, 목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는 매도인이 지급하는 인도조건입니다. 물품의 위험이전 시기는 물품이 지정선적항 본선의 난관을 통과할 때이고,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 목적항까지의 운임, 양하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나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Incoterms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조건을 사용할 경우, 선적항 또는 목적항까지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Incoterms에서 정한 인도조건만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Incoterms는 인도조건 등 용어해석에 관한 규칙일 뿐,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위험이전시기, 비용부담, 통관의무 및 보험료 부담 등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물품대금의 지급

지급기일.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구매자와 공급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매자는 본건 제품의 구매대금을 해당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본건 제품 전부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통화.

구매자와 공급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에 의한 금액의 지급은 모두 한국 원화로 이루어진다.

국제거래계약에 있어서는 환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물품대금의 지급통화,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일과 지급일 간에 환율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쪽이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밀정보.

1. 구매자와 공급자는 각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기밀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목적 범위 이외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하면 안 된다. 단, 구매자가 본 부품 또는 본 부품이 들어 있는 제품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구매자와 공급자는 각각, 일본국 또는 외국에서 관공서, 재판소 그 외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에 근거해 개시명령 또는 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요구에 따라 기밀정보를 개시할 수 있다. 단, 개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시 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구매자와 공급자는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기밀정보를 복제할 수 있다.

4. 구매자와 공급자는 각각, 개시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때는 그 지시를 따르고 즉시 기밀정보를 반환, 폐기 또는 소거해야 한다.

5. 구매자와 공급자는 각각 필요에 의해 자기가 개시한 기밀정보의 사용조

진, 개시범위, 적용기간, 보관, 반환방법 등의 관리조건을 쌍방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6. 구매자와 공급자는 각각 재직 중에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알게 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상대방의 기밀정보에 관해 퇴직 후에도 의무를 진다.

7. 구매자와 공급자는 각각 상대방에게 개시한 기밀정보의 취급 준수에 대해서 쌍방 협의하여 상대방의 관리 상황을 심사할 수 있다.

기밀정보 소유권.

구매자가 제시한 기밀유지대상인 모든 기밀정보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한다.

기밀유지기한.

본 계약의 기밀에 관한 기밀유지기한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및 본 계약에 따른 부품 거래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말하는 기밀정보는 본 계약 체결시로부터 공급자가 구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사로부터 개시받은 모든 기밀정보가 그 대상이 된다.

존속조항.

제○조 내지 제○조는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 간에서는 업무관계로 인하여 각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계약유지의무는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가 계속 유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규정하여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의한 비밀침해 경우까지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1. 계약위반시 위약책임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계약위반의 유형을 나열하면서 그 각각의 조항에서 위반 효과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계약위반시 부담하는 책임(예컨대 손해배상, 해지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손해배상

손해배상.

1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 공급자는 (a) 공급자, 그 직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본 계약에 의한 행위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 (b) 본 계약상의 의무, 확약 및 합의의 위반, (c) 본 계약에 규정된 진술 또는 보증의 위반 및 (d) 제품보증의 위반 등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종류를 불문한 모든 책임, 손실, 청구,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요구 또는 손해로부터 구매자와 구매자의 임원, 이사, 주주, 직원, 보험자,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 각각을 면책하고 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구매자의 손해배상책임. 구매자는 (a) 구매자, 그 직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본 계약에 의한 행위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 (b) 본 계약상의 의무, 확약 및 합의의 위반 및 (c) 본 계약에 규정된 진술 또는 보증의 위반 등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종류를 불문한 모든 책임, 손실, 청구,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요구 또는 손해로부터 공급자와 공급자의 임원, 이사, 주주, 직원, 보험자,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 각각을 면책하고 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상 방식이며,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 및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아래 기재한 위약금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할 때에는 계약상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와 금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적 손해에 한정할 것인지 인적 손해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직접손해만 부담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간접손해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거래 관계, 물품의 객관적 성질, 의무위반의 정도, 시장의 일반적인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약금

인도의 지연.

1. 위약금. 본건 제품이 구매자의 책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기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기일 이후 본건 제품이 실제로 인도되는 날까지 매 1일당 인도가 지연된 본건 제품 가격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조에 의하여 청구되는 위약금의 총액은 인도가 지연된 본건 제품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의한 위약금은 청구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구매자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에서 해당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2. 취소. 공급자가 인도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본건 제품 전부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취소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해당 구매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구매주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은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손해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해 둔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면, 위약금은 손해의 실제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무위반 자체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 보통입니다. 때로는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도 위약금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위약금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위약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 액수를 산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위반시 위반 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penalty) 규정을 두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해지.

1 해지사유.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된다:

(a)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에 명시한 본 계약기간의 만료시 해지된다.

(b)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본 계약 중대 위반 사실을 그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동통지 후 30일이 되는 날 해지된다. 단, 제○조, 제○조 및 제○조에서 정한 본건 제품의 인도지연 또는 부적합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조, 제○

조 및 제○조에 의해 규율된다.

(c) 공급자의 구조조정, 합병, 자산의 실질적인 전부의 매각이나 공급자의 경영진, 지배권 또는 법인 형태의 변경 시 구매자에 의한 통지로 즉시 해지된다.

(d) (i)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재산에 대해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ii) 상대방 당사자가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양도를 행하거나, (iii) 파산법 또는 도산법 등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법적 절차가 개시되고 동 절차가 그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 또는 기각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통지에 의해 즉시 해지된다.

2 해지의 효과. 해지 후에:

(a) 아래 (b)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지 통지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모든 주문은 취소된다.

(b) 구매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주문되어 이미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이 지급된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존속조항.

제○조, 제○조 및 제○조 내지 제○조는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의 해지 사유 및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동안 쌓아온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일시에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제3의 거래처를 탐색하는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에 있어서는 계약기간의 종료, 당사자 쌍방의 합의 등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와 같은 합의해지의 경우 별다른 해지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후자와 같은 일방적 해지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계속 이행이 무의미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지 이후에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비밀유지의무 등 일정한 조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CISG 규정에서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해지가능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해 두거나 CISG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두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12.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

준거법;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의 해석, 유효성, 그 이행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상 분쟁 해결 조항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협상력 차이에 따라 협상력이 큰 쪽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중요한 비즈니스가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증거의 수집 측면에서 편리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어 준거법 및 분쟁 해결을 한국법 및 한국법원으로 지정하도록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 CISG 협약의 적용배제 합의

통상적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국제거래계약에 있어서는 한국법 또는 일본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외국판결과 중재판정은 CISG 협약 규정이 국내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ISG 협약을 전부 배제하고 한국/일본의 내국법만을 준거법으로 삼기 위해서는 CISG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CISG 협약은 임의규정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CISG 협약과 반대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한국과 일본에서는 거래의 모든 과정 또는 계약서의 개별조항에 대해 조목 조목 따지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하거나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여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중요한 상담과정은 문서화하고, E-mail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며, 상호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 국제무역 영문계약서 작성의 이론과 실무, 제2판, 신두식, 삼영사, 2012년
- 국제 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석광현, 박영사, 2010년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석광현, 박영사, 2012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하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적 고려 사항, 정홍식, 통상법률 2010-8, 제10면
-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해석과 적용, 이진기, 비교사법 제17권 2호, 제211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상의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연구, 이창현, 사법논집 40집, 법원행정처, 제269면
- 무역거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범위로서 당사자자치의 원칙 및 그 한계에 대한 고찰, 김상만, 통상법률 2012-6, 제57면

참고 사이트

-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www.kjc.or.kr)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시장수출투자진출정보 KOTRA 글로벌 윈도우 홈페이지(www.globalwindow.org)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IV. 표준계약서

1. 표준 구매계약서 (국문)

구매계약서

본 구매계약(본 “계약”)은 ____년 ____월 ____일 (“발효일”) ____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국 법인인 ____ (“구매자”)와 ____에 그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 법인인 ____ (“공급자”) 간에 체결한다.

1. 구매 및 공급의 합의. 본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본건 제품(아래 정의한 바에 따름)을 구매하고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효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그 후 본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1달 전까지 해지통지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말일부터 1년씩 연장된다.

3. 판매권 부여. 공급자는 본건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배타적,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며, 공급자는 본건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본건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매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본건 제품을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국외에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 일방이 본 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사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40%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¹

3. 본건 제품. 본 계약에서 “본건 제품”이라 함은 별첨 A 제품목록에 명시된 [**제품명]을 의미한다.

¹ 독점권을 부여받을 경우 본 조항을 삽입

4. 구매주문서.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별첨 B의 양식에 따른 구매주문서(“구매주문서”)를 송부하여 본건 제품을 주문한다. 공급자는 주문된 본건 제품 일체를 구매주문서에 인도일로 기재된 날(“인도기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5. 인도. 본건 제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본건 제품이 인도되었을 때, 제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본건 제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따른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6. 인도지연.

6.1. 위약금. 본건 제품이 구매자의 책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기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기일 이후 본건 제품이 실제로 인도되는 날까지 매주당 인도가 지연된 본건 제품 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제6.1조에 의하여 청구되는 위약금의 총액은 인도가 지연된 본건 제품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제6.1조에 의한 위약금은 청구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구매자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에서 해당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6.2. 취소. 공급자가 인도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본건 제품 전부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취소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해당 구매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구매주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은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7. 품질 및 수령. 구매자는 제품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본건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본건 제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부적합 통지가 공급자에게 도달하고 또한 당해 부적합 제품이

그와 같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건 제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적합 통지의 수령시, 공급자는 신속하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 부적합 통지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구매자가 상술한 120일의 기간 이내에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부적합 제품을 모든 면에서 제품목록에 부합하는 대체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공급자가 상술한 바에 따라 부적합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한 제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취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구매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구매주문이 취소된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은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8. 거래조건. 본건 제품에 관한 일체의 거래 및 그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법적 구제수단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매주문서와 본 계약의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의 조건이 우선한다.

9. 가격. 본건 제품의 가격은 별첨 C 가격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가격표상의 가격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10. 세금. 구매자와 공급자가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경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등 일체의 세금에 대한 납부책임을 진다.

11. 지급.

11.1 지급기일.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구매자와 공급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매자는 제9조에 따른 본건 제품의 구매대금(“구매대금”)을 해당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본건 제품 전부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11.2 통화. 구매자와 공급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에 의한 금액의 지급은 모두 한국 원화로 이루어진다.

12. 비밀유지.

12.1 비밀정보.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결과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수령하는 비밀 또는 재산적 정보로 지정된 정보(“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 어느 당사자가 제12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12.2 용도제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예정된 목적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자신의 직원 또는 자문역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2.3 공표. 본 계약의 어떠한 당사자도, 법률상 요구되거나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지 아니한다.

13. 손해배상.

13.1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 공급자는 (a) 공급자, 그 직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본 계약에 의한 행위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 (b) 본 계약상의 의무, 약속 및 합의의 위반, (c) 제14조에 규정된 진술 또는 보증의 위반 및 (d) 제16조의 제품보증의 위반 등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종류를 불문한 모든 책임, 손실, 청구,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요구 또는 손해로부터 구매자와 구매자의 임원, 이사, 주주, 직원, 보험자,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 각각을 면책하고 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2 구매자의 손해배상책임. 구매자는 (a) 구매자, 그 직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본 계약에 의한 행위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 (b) 본 계약상의 의무, 확약 및 합의의 위반 및 (c) 제15조에 규정된 진술 또는 보증의 위반 등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종류를 불문한 모든 책임, 손실, 청구,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요구 또는 손해로부터 공급자와 공급자의 임원, 이사, 주주, 직원, 보험자,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 각각을 면책하고 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공급자의 진술 및 보증.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구매자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14.1 공급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의무 일체를 이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 권리 및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14.2 공급자는 공급자 및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률, 규칙 및 정부당국(및 그 하위기관)의 규정 일체를 준수하였으며, 준수할 것이다.

14.3 공급자가 본건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은 공급자가 소유하거나 그에게 유효하게 라이선스가 허여된 것이고, 공급자의 지적재산권 사용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15. 구매자의 진술 및 보증. 구매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의무 일체를 이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 권리 및 권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급자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16. 제품보증.

16.1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본건 제품에 대하여 인도된 날부터 3년의 기간(“보증기간”) 동안 품질보증(“제품보증”)을 제공한다. 본 계약에

의한 제품보증은 공급된 본건 제품 및 공급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조달한 본건 제품의 자재, 부품 및 부속품이 (a)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품이며 만족스럽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이고 설계 오류, 조악한 자재, 조잡한 기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을 비롯한 어떠한 결함도 없는 상태이며, (b) 최고급품이고 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며, (c) 제품목록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보증을 포함한다.

16.2 공급자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본건 제품의 자재 및 기술상의 결함 일체를,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체 없이 수리 또는 교체한다.

16.3 보증기간 중 또는 보증기간 후에 발견된 하자가 본건 제품의 특정 인도분의 1%를 초과하는 제품에서 발견되고, 그 하자가 공급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인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본건 제품이 본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본건 제품에 하자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제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포함함)를 취한다. 구매자가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급자가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본 계약상 구매자의 다른 권리에 대한 제한 없이,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모든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구매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6.4 제16.3조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하자를 수리하거나 또는 제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일체를 구매자에게 배상한다.

17. 통지.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통지 수령을 위한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른 또는 본 계약상 허용된 통지는 아래에 명시된 주소지 또는 일방

당사자가 본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기타 주소지로 (a) 인편으로 교부되거나, (b) 수신 확인된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되거나, (c) 수령확인서를 교부하는 특송서비스로 발송되거나, (d) 수령확인을 요하는 배달증명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송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매자에게:

_____ 주식회사

참 조: _____

주 소: _____

전 화: _____

팩 스: _____

공급자에게:

_____ 주식회사

참 조: _____

주 소: _____

전 화: _____

팩 스: _____

18. 분리가능성. 본 계약의 어느 부분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해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단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가능한 한 원 규정과 가장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본 계약에 의한 당사자들의 원래 의도를 합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19. 해지.

19.1 해지사유.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된다:

(a)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명시한 본 계약 기간의 만료시 해지된다.

(b)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본 계약 중대 위반 사실을 그에게 통지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동 통지 후 30일이 되는 날 해지된다. 단, 제6조, 제7조 및 제16.3조에서 정한 본 건 제품의 인도 지연 또는 부적합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16.3조에 의해 규율된다.

(c) 공급자의 구조조정, 합병, 자산의 실질적인 전부의 매각이나 공급자의 경영진, 지배권 또는 법인 형태의 변경 시 구매자에 의한 통지로 즉시 해지된다.

(d) (i)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재산에 대해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ii) 상대방 당사자가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양도를 행하거나, (iii) 파산법 또는 도산법 등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법적 절차가 개시되고 동 절차가 그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 또는 기각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통지에 의해 즉시 해지된다.

19.2 해지의 효과. 해지 후에:

(a) 아래 제19.2(b)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지 통지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모든 주문은 취소된다.

(b) 구매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주문되어 이미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이 지급된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20. 포기의 부존재. 본 계약상 권리의 포기 및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한 면책은 그와 같은 포기 또는 면책을 하는 당사자가 포기 또는 면책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또는 포기는 다른 또는 향후 발생하는 위반에 대한 동의, 포기 또는 면책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1. 존속조항. 제12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및 제25조 내지 제27조는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22. 양도. 본 계약의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의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양도 또는 위탁은 무효이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 및 각각의 승계인과 허용된 양수인을 구속하고 동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적용된다.

23. 수정. 본 계약은 본 계약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본 계약의 양 당사자들의 명의로 체결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24. 부분. 본 계약은 동시에 2부 이상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정본으로 간주되고, 부분 일체는 하나의 동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25. 준거법;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의 해석, 유효성, 그 이행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6. 완전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별첨과 더불어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위 목적과 관련한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모든 과거 및 현재의 진술, 논의, 협의, 이해 및 합의를 대체한다.

27. 언어. 본 계약은 영어 및 한국어로 작성 및 체결되며 본 계약의 번역본이 서로 상이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수권 대표자로 하여금 서두에 기재한 일자에 본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게 하였다.

[구매자]

____ 주식회사

서 명: _____

성 명: _____

직 위: _____

[공급자]

____ 주식회사

서 명: _____

성 명: _____

직 위: _____

2. 표준 구매계약서 (영문)

PURCHASE AGREEMENT

This Purcha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__. __, ____ (“Effective Date”) by and between ____, a Korean corporation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____ (“Purchaser”), and ____, a Japanese corporation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____ (“Supplier”).

1. Agreement to Purchase and Supply. Purchaser agrees to purchase from Supplier and Supplier agrees to sell to Purchaser the Products (as defined below),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under.

2. Term. The term of this Agreement is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unless terminated earlier as provided herein. Thereafter, this Agreement shall be renewed for successive one year periods on its anniversary date, unless one of the parties has sent a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at least one month from the last day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3. Exclusive Distributorship. Supplier shall grant to Purchaser the right to exclusively distribute the Product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upplier shall not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 sell the Product, half-finished Product or any other products similar to the Product directly or indirectly in Korea nor provide them to a third party that has an

intent to sell or resell them in Korea. Purchaser shall not sell or export the Product, half-finished Product or any other products similar to the Product supplied by the Supplier, directly or indirectly outside Korea. If a party commits such a breach set forth in this Article 3, he/she shall pay to the other party the amount of 40% of sales amount from that breach as liquidated damages.²

3. Products. The term “Products” as used herein refers to [**describe products] as set forth in the Product List attached hereto as Exhibit A.

4. Purchase Order. Purchaser shall order the Products by sending a purchase order to Supplier in the form attached hereto as Exhibit B (“Purchase Order”). Supplier shall deliver all such Products to Purchaser by the delivery date stated in the Purchase Order (“Delivery Date”).

5. Delivery. Delivery of the Products shall be made to the location designated by Purchaser. Subject to Section 7, delivery will be deemed complete and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Products will pass to Purchaser, upon delivery of the Products to such location designated by Purchaser.

6. Delayed Delivery.

6.1. Penalty. In the event that the Products have not been delivered by the Delivery Date due to a cause not attributable to Purchaser, Purchaser has the right to claim as a penalty two

² 독점권을 부여받을 경우 본 조항을 삽입

percent (2%) of the price of the Products of which delivery has been delayed, per each full week after the Delivery Date until the date the Products are actually delivered; provided, however, the total amount of such claim under this Section 6.1 shall not exceed ten percent (10%) of the price of such delayed Products. Any amount of penalty under this Section 6.1 shall become due on demand and Purchaser shall be entitled to deduct any amount of penalty due from any unpaid invoice.

6.2. Cancellation. If Supplier fails to deliver all the Products specified in the Purchase Order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elivery Date, Purchaser, at its option, may cancel that portion of or the whole Purchase Order by sending a cancellation notice to Supplier, without further liability, and any payment made by Purchaser in respect of such Products shall be forthwith returned to Purchaser.

7. Quality and Acceptance. Purchaser reserves the right to reject and refuse acceptance of any portion or the entire lot of any Products which do not conform in all respects with the Product List. The Products shall be deemed accepted by Purchaser unless Purchaser sends Supplier a notice of nonconformity within 120 days of delivery to Purchaser thereof and such nonconforming Product is returned to Supplier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such notice. Upon receipt of such notice, Supplier shall deliver a conforming Product to Purchaser in an expeditious manner,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following the receipt of such notice. If Purchaser provides such notice within such 120 day period, Purchaser will have the right to exchange such nonconforming Product for a replacement Product that conforms in all respects with the Product List; provided, however,

that if Supplier fails to deliver a conforming Product within thirty (30) days of receipt of such notice as described above, Purchaser, at its option, may cancel that portion of or the whole Purchase Order, by sending a cancellation notice to Supplier, without further liability, and any payment made by Purchaser in respect of such Products shall be forthwith returned to Purchaser.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is Section 7, Purchaser may within six (6) months from delivery of any Products, request a price adjustment or refund, or claim damages against Supplier, if any Products have latent defects that would not have been discoverable at the time of delivery.

8. Terms of Sale and Purchase. All sales and purchase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remedies of the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any conflicting terms in the Purchase Order and this Agreement, the terms in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9. Price. The price of the Products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Price List attached hereto as Exhibit C. All prices quoted on the Price List shall be valid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in writing by Purchaser and Supplier.

10. Taxe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in writing by Purchaser and Supplier, Supplier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taxes including national and local taxes, as the case may be, that are imposed on Supplie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11. Payment.

11.1 Due Date.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or agreed upon by Purchaser and Supplier, Purchaser shall pay the purchase price for the Products as calculated based on Section 9 above ("Purchase Price") within sixty (60) days of the acceptance of all the Products in the relevant Purchase Order by Purchaser.

11.2 Currency. All payments to be made hereunder shall be in Korean Won,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in writing by Purchaser and Supplier.

12. Non-Disclosure.

12.1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party hereto shall protect and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any information designated a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which any party receives from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is Agree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Failure to adhere to the terms of this Section 12 by any party will be considered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12.2 Limitation on Use. Each party hereto shall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solely in connection with the purpose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ach party hereto shall not disclo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person except to its employees or consultants, on a need to know basi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12.3 Publicity. None of the parties hereto shall make public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hereto except

as required by law or pursuant to a lawful request of a governmental agency.

13. Indemnification.

13.1 Supplier Indemnification. Supplier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Purchaser and each of Purchaser's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employees, insurers, attorneys, successors and assign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iability, losses, claims,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demands or damages of any kind,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a) the acts or omissions of Supplier, its employees, representatives or agents,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b) a breach of any of its obligations, covenants and agreement under this Agreement; (c) a breach of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contained in Sections 14 below; and (d) a breach of the Product Warranty contained in Section 16 below.

13.2 Purchaser Indemnification. Purchaser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Supplier and each of Supplier's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employees, insurers, attorneys, successors and assign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iability, losses, claims,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demands or damages of any kind,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a) the acts or omissions of Purchaser, its employees, representatives or agents,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b) a breach of any of its obligations, covenants and agreement under this Agreement; and (c) a breach of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contained in Sections 15 below.

1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upplier. Suppli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o Purchaser that:

14.1 it has full power, right and authority to execute this Agreement, and to fulfill all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14.2 it has complied and will comply with all 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any governmental body of any nation (and sub-bodies thereof) having jurisdiction over it and/or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and

14.3 the intellectual properties used by it for manufacture of the Products is owned by it or validly licensed to it, and its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ies does not and will not infringe in any respect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15.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Purchaser. Purchas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o Supplier that it has full power, right and authority to execute this Agreement, and to fulfill all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16. Product Warranty.

16.1 Supplier shall give a warranty (“Product Warranty”)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delivery (“Warranty Period”) for the Products supplied hereunder. The Product Warranty provided hereunder includes a warranty that the Products supplied and all materials, parts and components thereof provided by Supplier, whether internally or from third parties, will: (a) be new and unused and shall be in satisfactory working order and free from all defects including defects arising out of faulty design, inferior

materials, faulty and inferior workmanship; (b) be of the highest quality and fit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intended; and (c) strictly conform to the Product List.

16.2 Supplier shall repair or replace, at its own option and cost and without delay, all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of the Products appearing within the Warranty Period.

16.3 In the event any defects that appear during or after the Warranty Period are found in more than one percent (1%) of the Products of the particular delivery, which are attributable to a defect in the fulfillment of Supplier’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n Supplier shall, at its own cost and without delay, undertake any and all necessary corrective ac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placing the Products of that particular delivery with new Products pursuant to Section 7) to ensure that the Products conform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that such defects do not reappear in the Products. If Supplier fails to remedy any such defects within a reasonable time period set by Purchaser, then Purchaser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cancel all undelivered orders by written notice to Supplier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of Purchaser under this Agreement and after such termination, Purchaser shall have no liability of any kind whatsoever to Supplier.

16.4 With reference to Section 16.3 above, in case the parties mutually agree that Purchaser shall undertake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such defects on behalf of Supplier, then Supplier shall reimburse Purchaser for all costs thereof.

17. Notices. Each party hereto may change its address and point

of contact for notices by giving written notice in accordance herewith. Any notice provided for or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will be treated as having been given when (a) delivered personally, (b) sent by confirmed electronic mail or facsimile, (c) sent by commercial overnight courier with written verification of receipt, or (d) mailed postage prepaid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to the party to be notified, at the address set forth below, or at such other place of which any party has been no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17.

If to Purchaser:

_____ Inc.

Attention:

Address:

Telephone:

Facsimile:

If to Supplier:

_____ Inc.

Attention:

Address:

Telephone:

Facsimile:

18. Severability. If any part of this Agreement is determin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be illegal, invalid or unenforceable, that part will be amended to achieve as nearly as possible the same economic effect as the original provision and the remainder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to the extent that it can reasonably effect the original intent of

the parties hereto.

19. Termination.

19.1 Causes for Termination. This Agreement will terminate:

(a) At the end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set forth in Section 2, unless such term will be renew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under Section 2.

(b)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Purchaser or Supplier gives the other party a notice of material breach by the other party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breach is cured before that day; provided, however, that late delivery or nonconformity of Products as provided in Sections 6, 7 and 16.3 shall be governed by the terms of Sections 6, 7 and 16.3, respectively;

(c) Upon notice by Purchaser, immediately, upon the reorganization, merger, sale of substantially all of its assets, or change in management, voting control or corporate form, of Supplier; or

(d) Upon notice by either party hereto, immediately, if: (i) a receiver is appointed for the other party or its property; (ii) such other party becomes insolvent or unable to pay its debts as they mature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or makes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or (iii) any proceedings are commenced against such other party under any bankruptcy or insolvency law and such proceedings are not vacated or set aside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thereof.

19.2 Effect of Termination. After termination:

(a)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9.2(b) below, all orders not delivered by the date of notice of termination shall be cancelled; and

(b) Purchaser will be entitled, at its option, to have delivered the Products ordered prior to the notice of termination for which the Purchas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to Supplier.

20. No Waiver. No term or provision hereof will be considered waived by any party, and no breach excused by any party, unless such waiver or consent is in writing signed on behalf of the party against whom the waiver is asserted. No consent by any party to, or a waiver of, a breach by either party, whether express or implied, will constitute consent to, a waiver of, or an excuse of any other, different, or subsequent breach of any party.

21. Survival. Sections 12 through 19, 21 and 25 through 27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22. Assignment. No parties hereto may assign any rights or delegate any dutie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the other parties' prior written consent, and any attempt to do so without such consent will be void. This Agreement will bind and inur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23. Amendment.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only by a writing that refers explicitly to this Agreement and that is signed on behalf of both parties hereto.

24. Counterparts.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simultaneously in two or more counterparts, each of which shall be deemed an original, but all of which together shall constitute one and the same instrument.

25. Governing Law; Jurisdiction. This Agreement wi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Any dispute arising out of, related to,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rpretation, validity, or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6.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together with all Exhibits hereto,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and supersedes all prior and contemporaneous representations, discussions, negotiations, understandings and agreements whether written or oral, with respect to such subject matter.

27. Language. This Agreement is written and executed in English and Korean.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two versions.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duly executed by their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y first set forth above.

[PURCHASER]

____ Inc.
By : _____
Name: _____
Title: _____

[SUPPLIER]

____ Inc.
By: _____
Name: _____
Title: _____

3. 표준 구매계약서 (일문)

購買契約

本購買契約(本「契約」)は__年__月__日(「発効日」)、____に主な事業場を置く韓国法人____(「購買者」)と____にその主な事業場を置く日本国法人____(「供給者」)の間に締結する。

1. 購買及び供給の合意 本契約上の条件により、購買者は供給者から本件製品(以下に定義したところによる)を購入し、供給者は購買者にこれを供給するものとする。
2. 契約期間 本契約の契約期間は、本契約が定めたところによって中途解約される場合を除き、発効日から1年とする。その後、本契約は、一方の当事者が他の当事者に契約期間満了1ヶ月前までに解約通知をしない限り、契約期間末日から1年ずつ延長される。

3. 販売権付与 供給者は契約製品に関して、購買者に大韓民国国内においての排他的, 独占的な販売権を付与し、供給者は契約製品に関して、国内において直接または第3者を通じて契約製品を販売しない。ただ、購買者はいかなる場合でも、供給者から供給を受けた契約製品を本人または第3者を通じて国外へ販売してはならない。当事者一方が本条所定の義務を違反する場合、違反当事者は当該違反行為によって発生する売上の40%相当の金員を損害賠償予定額として相手方に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³

3. 本件製品 本契約における「本件製品」とは、別添Aの製品リストに明示された[**製品名]を指す。

³ 독점권을 부여받을 경우 본 조항을 삽입

4. 購買注文書 購買者は供給者に別添Bの様式による購買注文書(「購買注文書」)を送付して本件製品を注文する。供給者は注文された本件製品一切を購買注文書に引渡日として記載された日(「引渡期日」)までに買主に引き渡す。

5. 引渡し 本件製品は購買者が指定した場所で引き渡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する。購買者が指定した場所に本件製品が引き渡されたとき、第7条の適用を受けるという条件のもとで、引渡しが完了したものと看做され、本件製品の損失又は損傷によるリスクが購買者に移転される。

6. 引渡遅延

6.1. 違約金 本件製品が購買者の責任以外の事由によって引渡期日まで引き渡されない場合、買主は引渡期日以後から本件製品が実際に引き渡される日まで、週当たり引渡しが遅延された本件製品価格の2%に当たる金額を違約金と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本第6.1条によって請求される違約金の総額は引渡しが遅延された本件製品価格の10%を超過しないものとする。本第6.1条による違約金は請求次第、支払期日が渡来し、購買者は未払いの物品代金から当該違約金を控除することができる。

6.2. 取消し 供給者が引渡期日から30日以内に購買注文書に記載された本件製品全部を引き渡すことができない場合、購買者は自らの選択によって、如何なる追加的な責任も負わずに、供給者に取消通知書を送付することで当該購買注文の一部又は全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このとき、購買注文が取り消された製品に対して購買者が支払った代金は直ちに購買者に返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7. 品質及び受領 購買者は製品リストと一致しない本件製品の一部又は全部の受領を断ることができる。本件製品が購買者に引き渡された日から

120日以内に不適合通知が供給者に到達し、かつ当該不適合製品がかかる通知日から60日以内に供給者に返還されない限り、購買者は本件製品を受領したものと看做される。不適合通知の受領時、供給者は速かに、しかし、如何なる場合にも同不適合通知の受領後30日以内に、適合した製品を購買者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購買者が上述した120日の期間内に不適合通知を行う場合、購買者は当該不適合製品をすべての面で製品リストに合致する代替製品への交換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但し、供給者が上述したところにより不適合通知の受領日から30日以内に適合した製品を引き渡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購買者は自らの選択によって、如何なる追加的な責任も負わずに、供給者に取消通知をなすことで当該購買注文の一部又は全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このとき、購買注文が取り消された不適合製品に対して購買者が支払った代金は直ちに購買者に返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8. 取引条件 本件製品に関する一切の取引及びこれに係る当事者らの法的救済手段は本契約が定めるところによる。購買注文書と本契約の条件が相反する場合、本契約の条件が優先する。

9. 価格 本件製品の価格は別添Cの価格表で定めたとおりとする。価格表上の価格は、購買者と供給者が別途書面で合意しない限り、本契約の契約期間中有効とする。

10. 税金 購買者と供給者が別途書面で合意しない限り、供給者は場合に応じて本契約に係り供給者に課される国税、地方税など一切の税金に対する納付責任を負う。

11. 支払い

11.1 支払期日 本契約で別途定めるか購買者と供給者が別途合意する場合ではない限り、購買者は第9条による本件製品の購買代金(「購買代金」)を当該購買注文書に記載された本件製品全部を受領した日から60

日以内に供給者に支払う。

11.2 通貨 購買者と供給者が書面で別途合意する場合ではない限り、本契約による金額の支払いはすべて韓国ウォンでなされる。

12. 秘密保持

12.1 秘密情報 各当事者は本契約の結果として相手方当事者から受領する秘密又は財産的情報に指定された情報(「秘密情報」)を保護し、これを秘密として保持する。ある当事者が第12条を遵守できない場合、これは本契約の重大な違反と看做される。

12.2 用途制限 各当事者は本契約で予定された目的に限って秘密情報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本契約の各当事者は、本契約の履行に係り、必要に応じて自らの職員又は諮問役に秘密情報を開示する場合を除き、第三者に秘密情報を開示しない。

12.3 公表 本契約の如何なる当事者も、法律上要求される場合や政府機関の合法的な要請による場合を除き、相手方当事者の書面による事前同意なしに本契約の内容に係る情報を公表しない。

13. 損害賠償

13.1 供給者の損害賠償責任 供給者は(a)供給者、その職員、代表者又は代理人の本契約による行為に係る作為又は不作為、(b)本契約上の義務、確約及び合意の違反、(c)第14条に規定された表明又は保証の違反、及び(d)第16条の製品保証の違反などから又はこれに関連して発生する、その種類を問わない一切の責任、損失、請求、費用(合理的な弁護士選任費用を含む)、要求又は損害から、購買者と購買者の役員、理事、株主、職員、保険者、代理人、承継人及び譲受人それぞれを免責し、これらに発生した損害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13.2 購買者の損害賠償責任 購買者は(a)購買者、その職員、代表者又は代理人の本契約による行為に係る作為又は不作為、(b)本契約上の義務、確約及び合意の違反、及び(c)第15条に規定された表明又は保証の違反などから又はこれに関連して発生する、その種類を問わない一切の責任、損失、請求、費用(合理的な弁護士選任費用を含む)、要求又は損害から、供給者と供給者の役員、理事、株主、職員、保険者、代理人、承継人及び譲受人それぞれを免責し、これらに発生した損害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14. 供給者の表明及び保証 供給者は次の事項を購買者に表明及び保証する。

14.1 供給者は本契約を締結して本契約による自らの義務一切を履行し得る完全な権限、権利及び権能を保有している。

14.2 供給者は供給者及び本契約の締結及び履行に関して管轄権を持つ法律、規則及び政府当局(及びその下位機関)の規定一切を遵守しており、今後においても遵守する。

14.3 供給者が本件物品の製造のために用いる知的財産権は、供給者が所有するか供給者に有効にライセンスが許与されたものであり、供給者の知的財産権使用は如何なる側面においても第三者の知的財産権を侵害せず、今後においても侵害しない。

15. 購買者の表明及び保証 購買者は本契約を締結して本契約による自らの義務一切を履行し得る完全な権限、権利及び権能を保有していることを供給者に表明及び保証する。

16. 製品保証

16.1 供給者は本契約によって供給される本件製品に対して、引き渡され

た日から3年間(「保証期間」)品質保証(「製品保証」)を提供する。本契約による製品保証は、供給された本件製品及び供給者が直接又は第三者を通じて調達した本件製品の資材、部品及び付属品が、(a)使用されたことのない新しい製品であって満足に正常作動する状態であり、設計ミス、粗悪な資材、粗雑な技術によって生じる欠陥を始めとする如何なる欠陥もない状態であり、(b)最高級品かつその意図された目的に適合し、(c)製品リストに正確に一致するという保証を含む。

16.2 供給者は保証期間内に発生する本件製品の資材及び技術上の欠陥一切を、自らが選択した方法によって、自らが費用を負担し、遅滞なく修理又は交換する。

16.3 保証期間中又は保証期間後に発見された瑕疵が本件製品の特定引渡分の1%を超過する製品から発見され、その瑕疵が供給者が本契約上の義務を十分に履行しなかったことに起因する場合、供給者は、自らの費用で遅滞なく、本件製品が本契約の条件に合致すべく、また本件製品に瑕疵が再度発生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必要な一切の是正措置(第7条によって当該製品を新製品に交換することを含む)を取る。購買者が定めた合理的な期間内に供給者がかかる瑕疵を改め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購買者は、本契約上の購買者の他の権利に対する制限なく、供給者に対する書面通知をもって本契約を解約し、まだ引き渡されていない一切の注文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このように本契約が解約された後は、購買者は如何なる義務も負わない。

16.4 第16.3条に係り、購買者が供給者に代わって瑕疵を修理するか製品を交換することで当事者らが相互合意する場合、供給者はそれによって発生した費用一切を購買者に賠償する。

17. 通知 本契約の各当事者は、本契約に規定されたところによって書面通知をすることで、通知受領のための自らの住所及び連絡先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本契約による、又は本契約において許容された通知

は、以下に明示された住所地又は一方の当事者が本第17条の規定によって通知するその他の住所地に(a)人伝で交付されるか、(b)受信確認された電子メール又はファックスで送付されるか、(c)受領確認書を交付する特送サービスで発送されるか、(d)受領確認を要する配達証明又は書留郵便で発送される場合、送付されたものと看做される。

購買者宛:
____株式会社
参照:
住所:
電話:
ファックス:

供給者宛:
____株式会社
参照:
住所:
電話:
ファックス:

18. 分離可能性 本契約のある部分が管轄権のある法院によって違法、無効又は執行不可能だと判断される場合、当該部分はできる限り原規定に最も類した経済的効果を達成するように修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本契約の残りの部分は本契約による当事者らの本来の意図を合理的に具現し得る範囲まで完全な効力を維持する。

19. 解約

19.1 解約事由 本契約は次のような場合、解約される:

(a) 第2条の規定によって契約期間が延長される場合を除き、第2条に明示した本契約期間の満了時、解約される。

(b) 購買者又は供給者が相手方当事者の本契約の重大な違反事実を相手方に通知した日から30日以内にかかる違反が是正されない場合、同通知後30日になる日に解約される。但し、第6条、第7条及び第16.3条で定めた本件製品の引渡遅延又は不適合に係る事項はそれぞれ第6条、第7条及び第16.3条によって規律される。

(c) 供給者の構造改革、合併、資産の実質的な全部の売却や供給者の経営陣、支配権又は法人形態の変更時、購買者による通知によって直ちに解約される。

(d) (i) 相手方当事者又はその財産に対して管理人が選任される場合や、(ii) 相手方当事者に不渡りが発生するか正常な事業過程において満期が渡来した債務を償還できない、又は債権者の利益のための譲渡を行う場合、(iii) 破産法又は倒産法などによって相手方当事者に対して法的手続が開始され、同手続がその開始日から60日以内に取消又は棄却されない場合、一方の当事者の通知によって直ちに解約される。

19.2 解約の効果 解約後に:

(a) 下記第19.2(b)項で定めた場合を除き、解約通知日までに引き渡されない一切の注文は取り消される。

(b) 購買者は、自らが選択する場合、解約通知前に注文され、既に供給者に購買代金が支払われた製品の引渡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0. 放棄の不存在 本契約における権利の放棄及び本契約の違反に対する免責は、かかる放棄又は免責をする当事者が放棄又は免責を主張する者を相手方として作成し署名した書面によらない限り有効と看做されない。相手方当事者の契約違反に対する一方の当事者の明示上、暗黙的同意又は放棄は、他の又は今後において発生する違反に対する同意、放棄又は免責を構成しない。

21. 存続事項 第12条ないし第19条、第21条及び第25条ないし第27条は本契約の解約後も効力を維持する。

22. 譲渡 本契約の如何なる当事者も相手方当事者の書面による事前同意なしに本契約上の権利を譲渡したり義務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ず、かかる相手方当事者の書面による事前同意を得ない譲渡又は委託は無効とする。本契約は当事者ら及びそれぞれの承継人と許容された譲受人を拘束し、同人らの利益のために適用される。

23. 修正 本契約は本契約を明示上に引用し、本契約の両当事者らの名義で締結された書面によってのみ修正又は補完され得る。

24. 副本 本契約は同時に2部以上の副本で締結されることができ、各副本は定本と看做され、副本一切は一つの同じ契約を構成する。

25. 準拠法; 管轄 本契約は大韓民国法律によって規律され解釈される。本契約の解釈、有効性、その履行から、又はこれに関連して発生する一切の紛争はソウル中央地方法院を管轄法院とする。

26. 完全合意 本契約は本契約の別添とともに本契約の目的に係る当事者らの完全な合意を構成し、上記目的に係る書面又は口頭でなされた一切の過去及び現在の表明、議論、協議、理解及び合意に取って代わる。

27. 言語 本契約は英語及び韓国語で作成及び締結され、本契約の翻訳版の間に相違がある場合、英語版が優先する。

これを証するため、当事者らは各自の授權代表者をして冒頭に記載の日付に本契約を適法に締結させた。

[購買者] ____株式会社 署名:_____ 氏名:_____ 職責:_____ [供給者] ____株式会社 署名:_____ 氏名:_____ 職責:_____	4. 계속적 매매계약서 (계약서 사례) 계속적매매 계약서 継続的売買契約書 Continuous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본 계약은 () 일에 ()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설립되어 현존하는 법인으로서 그 주요 영업소를 ()에 둔 () (본 계약에서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설립되어 현존하는 법인으로서 그 주요 영업소를 ()에 둔 () (본 계약에서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며, 本契約は、()日に、()法に基づき正当に設立され、現存する法人で、その主たる営業所を()に有する(本契約中にて以下「売り手」と称する)と、()法に基づき正当に設立され、現存する法人で、その主たる営業所を()に有する() (本契約中にて以下「買い手」と称する)との間で締結され、 This Agreement, made this () day of () by and between (),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ler) and (),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yer).	[해설] 서두 국제계약의 일반적 인 표시방법이다.
---	--	---

아래에 대해 증명한다.

以下のことを証する。

WITNESSETH THAT

매도인은 특히 본 계약 제2조에 규정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본 계약 제3조에 규정하는 지역에 위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위 제품을 매도인으로부터 수입 하고 위 지역에서 가공 (및/또는) 판매하고자 한다.

売り手は、とりわけ、本契約第2条に規定の製品を製造し、販売する事業に携っており、本契約第3条に規定の地域に前記製品を輸出することを希望しており、及び買い手は、前記製品を売り手から輸入し、前記地域にて加工（及び／又は）販売することを希望しているので、

WHEREAS, Seller is in the business, among other things,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s stipulated in Article 2 hereof, and is desirous of exporting the said products to the territory stipulated in Article 3 hereof, and WHEREAS, Buyer is desirous of importing from Seller and processing and/or selling the said products in the said territory.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합의하였다.

よってここに、相互に次のとおり合意された。

NOW, THEREFORE, it is mutually agreed as follows;

제1조 계속적 매매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제2조에 정의하는 계약품을 구매하고, 매

전문

1. 매도인은 업체이기도 한 경우를 상정한다.
2. 매수인은 계약품을 가공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할 것을 상정한다.
3. 매수인의 재판매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상정되어 있다.

제1조 계속적 매매

이 계약서에 따른 계속적 매매 합의

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이를 판매한다.

第1条 継続的売買

本契約の諸条件に従い、買い手は、売り手から継続的に第2条に定義する契約品を購入するものとし、売り手は、買い手に継続的にそれを販売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1. Continuous Sal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Buyers shall buy from Seller and Seller Shall sel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to Buyer continuously.

제2조 계약품

‘계약품’이란 이 계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또는 () 유닛에 설치하기 위하여 부속서()에 규정하는 () 및 서로 합의한 () 유닛의 다른 형을 의미한다.

‘컴포넌트’ 및 ‘스페어 파트’는 본 계약에서 이하 ‘계약품’이라 총칭한다.

第2条 契約品

「契約品」とは、それらの販売のために、又は () ユニットに組込むために付属書 () に規定する () 及び相互に合意することのある () ユニットの他の型を意味するものとする。 「コンポーネンツ」及び「スペア・パーツ」は、本契約において以下、「契約品」と総称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2. Products

“Products” shall mean () specified in Exhibit () for sales themselves or for fixed incorporation into ()

가 선언되고 있다.

제2조 계약품

1. 계약품은 그 자체로도 판매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제품과 결합해서도 판매될 수 있다.
2. 부품 등도 계약품으로서 언급하기로 되어 있다.

units and such other types of () units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Components” and “spare parts” shall be jointly referred to hereinafter as “Products”.

제3조 계약지역

1. ‘계약지역’이란 ()를 의미한다.
2. 매수인의 계약품 재수출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이는 또한 매수인이 계약품을 설치하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그 어떤 고객도 계약지역 외에서 계약품이나 그 최종 제품을 신청, 전시하거나 또는 판매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서면 승인이 없는 계약품 또는 최종 제품의 재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第3条 契約地域

1. 「契約地域」とは、()を意味するものとする。
2. 買い手による契約品の再輸出は、売り手の事前の書面による同意を条件とする。これは、また買い手が契約品を組込む最終製品についても適用される。買い手は、売り手に対して、そのいかなる顧客も、契約地域外に契約品やその最終製品を申込み、展示し、又は販売しないことを保証する。買い手は、売り手の書面による承認のない契約品又は最終製品の再輸出により生じる損害について、売り手に対して責任を負う。

Article 3. Territory

1. “Territory” shall mean ().
2. The re-export of products by Buyer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written consent of

제3조 계약지역

1. 제1항은 일반적인 표시방법이다.
2. 제2항은 엄격한 규정이므로, 독점 금지법과의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Seller. This is also applicable to the final products in which products are incorporated by Buyer. Buyer guarantees to Seller that any of its customers shall neither offer, exhibit nor sell products and its final products to outside Territory. Buyer is liable to Seller for damages arising from a re-export of Products or the final products not approved in writing by Seller.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정당하게 서명한 후에 발효된다. 본 계약은 () 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첫 해 또는 계속년도 말일 이전 최소한 6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등기우편으로 종료 통지를 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갱신된다.

第4条 契約期間

本契約は、両当事者が正当に署名した後に発効する。本契約は、()年間有効とし、その後は、初年又は継続年の末日の少なくとも6ヵ月前までに、当事者のいずれかが書留郵便で終了の通知をしない限り、1年毎に更新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4. Period of Agreement

This Agreement will come into effect after it has been duly signed by both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or a period of () and shall be renewed thereafter from year to year unless terminated by either of the parties' notice to be served by registered letter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ends of the first year or any consecutive year.

제4조 계약기간

1. 원 계약기간 후에는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2.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서는 흔히 있는 규정이다.

제5조 개별 계약

본 계약에 의거한 각 개별 계약은 본 계약에 따르기로 하며, 해당 계약은 본 계약에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제반 조건 및 본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매도인의 판매계약서식에 의해 체결, 이행된다.

第5条 個々の契約

本契約に基づく各個々の契約は、本契約に従うものとするが、当該契約は、本契約に規定されるものを除き、諸条件並びに本契約当事者の権利及び義務を定める売り手の販売契約書式によって締結され履行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5. Individual Contract

Each individual contrac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but such contract shall be concluded and carried out by Seller's contract form which shall set forth the terms, conditions and,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hereto except those stipulated in this Agreement.

제6조 구매 약속

1. 매수인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매도인으로부터 부속서 ()에 규정한 최저거래일정에 따른 수량의 계약품을 구매하며, 단 양 당사자는 수시로 서면을 통해 그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해당 최저 수량을 달성하는 한 매도인은 계약지역에서 매수인 외의 어떠한 자나 회사에도 계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

第6条 購入約束

1. 買い手は、本契約期間中、売り手から付属書 ()に定められた最低取引のスケジュールに従った数量の契約品を購入するものとするが、但

제5조 개별 계약

1. 이 계약서 자체는 확정적인 매매계약서라고는 볼 수 없다.
2. 매도인은 적절한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6조 구매 약속

1.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서 최저구매량이 설정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 매수인에게 독점구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계속적 매매 합의가 선언되고 있다.

し、両当事者は、随時書面によりその数量を変更できる。

2. 買い手が当該最低数量を達成する限り、売り手は、契約地域で買い手以外のいかなる者又は会社にも契約品を販売しないものとする。

Article 6. Purchase Commitment

1. Buyer shall purchase from Seller quantities of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of minimum transaction set forth in Exhibit ()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both parties may modify the quantities in writing from time to time.
2. As far as Buyer attains such minimum quantities, Seller shall not sell Products to any person or company other than Buyer in Territory.

제7조 가격 설정

1. 계약품 가격을 결정할 때, 매도인은 선전, 판로 조정 및 기타 판매 노력과 같은 매수인의 특별한 노력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본 계약에 어떠한 반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실제로 생산능력을 가진 제3자가 본 계약이 규정한 매도인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들의 특정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신청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경쟁 수준까지 이러한 특정량에 대한 가격을 낮추거나 그 특정량을 본 계약에 의거한 매수인의 약속 수량에서 줄인다.

第7条 価格設定

제7조 가격 설정

계약품의 가격 설정에 앞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최혜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제8조 지급

1. 각 개별 계약이 규정한 계약금액은 매도인이 만족하는 타당한 조건으로 일류은행이 발행한 확인부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해 매도인의 일람불어음에 대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지급된다. 해당 신용장은 개별 계약 체결일 후 30일 이내에 ()에서 개설된다. 해당 신용장의 금액은 ()로 한다.
2. 계약금액은 매도인이 매입한 가격이며 부과되는 어떠한 세금도 적용 시의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계산하며, 단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수익이나 세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법률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기 위한 증명서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관세를 포함하여 매수인 국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 요금 및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第8条 支払い

1. 各個々の契約に定める契約金額は、売り手が満足する妥当な条件で、一流銀行が発行した、確認付取消不能信用状により、売り手の一覽払い手形に対して買い手から売り手に支払われるものとする。当該信用状は、個々の契約の締結日後30日以内に、()にて開設されるものとする。当該信用状の金額は、()とする。
2. 契約金額は、売り手にとって正味額であり、賦課されるいかなる税金も、適用の場合の源泉徴収を除き、買い手の勘定とするが、但し、買い手は、売り手が売り手の収益又は税金から、場合によっては買い手が法律に基づき源泉した金額を控除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の証明書を売り手に提供する。前述を除き、買い手は、関税を含め、買い手国の法律に基づき賦課されるすべての税金、料金及び諸経費を負

제8조 지급

1. L/C 기준 결제이다.
2. 제2항의 규정은 계약품의 성질과도 관계가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인다.

担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8. payment

1. The contract amount be stipulated in each individual contract shall be paid by Buyer to Seller against Seller's draft, at sight, by an irrevocable and confirmed letter of credit under reasonable terms satisfactory to Seller, issued by a first class bank. Such letter of credit shall be opened in ()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execution date of the individual contract, The amount of such letter of credit shall be ().
2. The contract amount shall be net to Seller, and any taxes imposed shall be to Buyer's account, except for any withholding tax, if applicable, provided that Buyer supplies the Seller with a certificate aiming at enabling Seller to deduct from Seller's revenue or taxes, as the case may be, any amount thus withheld under the law be Buyer. Except for the preceding, Buyer shall bear all taxes, fees and changes imposed under the law of Buyer's country, including customs duties.

제9조 선적

1. 계약품의 인도 조건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FOB()로 한다.
2. 본 계약의 선적은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이행된다.
 - a) 견본류는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선적한다.
 - b) 개별 계약에 기재된 수량은 합리적 수량분으로 분할될 수 있다.

제9조 선적

1. 견본매매조건도 채택하였다.
2. 매수인은 계약품의 품질에 주 의하고 있다.
3. 제3항은 인도가

c) 최초 생산분은 매수인이 위 견본을 승인한 후 () 일에서 () 일 후 사이에 선적된다.

3. 매수인은 각 선적 첫날 이전 최소한 () 일 전에 선명, 선사명, ()의 대리인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최초 적하항의 착항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승인 없이 배선(配船)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적재가 각 선적일까지 시작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1일에 ()당 ()의 비율로 보관료를 지급하는 스톡야드에 계약품을 매수인의 위험 부담으로 매도인은 스스로의 재량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第9条 船積み

1. 契約品の引渡条件は、当事者間で別途合意されないかぎり、原則として、F O B () とする。

2. 本契約の船積みは、下記のスケジュールに従い履行されるものとする。

a) 見本類は、本契約締結後 () 日以内に船積みされるものとする。

b) 個々の契約に記載の数量は、合理的数量分に分割され得る。

c) 最初の生産分は、買い手が上記見本を承認してから () 日から () 日後の間に船積みされるものとする。

3. 買い手は、各船積みの最初の日より少なくとも () 日前に、船名、船会社名、() におけるその代理人の名称及び住所並びに最初の積荷港における着港時期を売り手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買い手は、売り手の事前承認なくして配船の変更をしないものとする。積込みが各船積日までに開始されない場合、買い手が 1 日につき () 当たり () の割合で保管料を支払うストックヤード

FOB조건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に、契約品を、買い手の危険負担で、売り手は自らの裁量で保管しつづけることができる。

Article 9. Shipment

1. The delivery terms for Products shall be in principle FOB ()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2. The shipm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fulfill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chedule.
 - a) Sample lot shall be shipped within () days after conclusion of this Agreement,
 - b) The quantity specified in the individual contract may be divided into reasonable number of lots.
 - c) First production lot shall be shipped between () and () days after approval of the above mentioned sample by Buyer.
3. Buyer shall notify Seller the name of the vessel, the name of shipping company, the name and address of their agent in () and estimated time of arrival at the first loading port at least () days prior to the first day of each shipment. Buyer shall make no change in the vessel arrangement without Seller's prior approval. In the event that loading is not commenced by the day of each shipment, Seller may, on its discretion, continue to store Products at Buyer's risk in its own stockyard for which Buyer shall pay storage fee to Seller at a rate of () per day.

제10조 수출입 라이선스

1. 매도인은 계약품 수입 라이선스를 매수인에게 취득하게 하는 데 필요한 또는 유익한 모든 서류, 정보 및 보고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2.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매도인이 제공한 서류를 이용하고, 수입국에서 요구받은 수입라이선스 및 기타 정부 승인 취득에 책임을 부담한다.

3. 개별 계약에 대한 수출라이선스를 ()정부가 거절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매도인은 즉시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第10条 輸出入ライセンス

1. 売り手は、契約品の輸入ライセンスを買い手に取得させるのに必要な又は好都合なすべての書類、情報及び報告書を買い手に提供するものとする。

2. 買い手は、本契約に基づいて売り手が提供した書類を利用して、輸入国で要求される輸入ライセンス及びその他政府承認を取得することに責任を負う。

3. 個々の契約についての輸出ライセンスが () 政府によって拒絶される場合、当該契約は無効となるものとし、売り手は、直ちにそれを買い手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10. Import and Export License

1. Seller shall supply Buyer with all documents, information and reports necessary or convenient to permit Buyer to obtain import licenses for Products.

2. Buyer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other governmental approval, using such documentation as supplied by Seller hereunder, required in the importing country.

제10조
수출입 라이선스

1. 매도인측 입장에 가까운 규정이 다.

2. 기재 내용은 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3. Should an expert license for the individual contract be refused by the () government, such contract shall become null and void and Seller shall immediately advise Buyer thereof.

제11조 포장

조립, 포장 및 마킹은 매도인의 자유 선택으로 한다.

第11条 梱包

組立て、梱包、包装及びマーキングは、売り手の自由選択とする。

Article 11. Packing

The make-up, packing, packaging and marking shall be at Seller's option.

제12조 검사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계약품은 매도인의 공장에서 매도인의 작업을 저해하지 않고 매수인이 검사한다. 매도인의 공장에서 검사하기 위해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타당한 장소, 시험시설, 전원 및 기타 시험설비를 제공한다. 매도인은 일단 매수인이 검사하고 합격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계약품에 대해 그 이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第12条 検査

買い手に引渡される契約品は、売り手の工場で売り手の作業を阻害することなく、買い手により検査される。売り手の工場での検査のため、売り手は、自らの費用で買い手に対し妥当な場所、試験施設、電源及びその他の試験設備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売り手は、一旦買い手が検査し、合格した品質に瑕疵がある契約品に対し、それ以上いかなる責任も負わ

제11조 포장
매도인 주도의 규정이다.

제12조 검사

1. 뒷문장의 규정은 매수인 입장에서 엄격하다.

2. 매도인의 이러한 면책약관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ないものとする。

Article 12. Inspection

Products to be delivered to Buyer may be inspected by Buyer at Seller's factory without interfering with Seller's operations. For inspections at Seller's factory, Seller shall, at its expense, provide Buyer with reasonable space, test facilities, power sources and other test equipment. Seller shall have no further responsibility for Products having quality defects that have been once inspected and passed by Buyer.

제13조 보수

매수인은 계약품 수령 후 그 유지, 수리 및 다른 용역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계약품의 가공, 사용, 유지 및 취급에 관하여 적절한 훈련 및 지도를 직원, 엔지니어, 판매원, 서비스맨 및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第13条 保守

買い手は、契約品の受領後、その保持、修理及び他の役務について責任を負い、契約品の加工、使用、保持及び取扱いに関して、適切な訓練及び指導をその従業員、エンジニア、販売員、サービスマン及び使用者に提供する責任を負う。

Article 13. Maintenance

Buyer is responsible for maintenance, repair, and other service of Products after receiving thereof and shall provide suitable training and instructions to its employees, engineers, salesmen, servicemen and users with respect

제13조 보수

계약품으로서 상정되어 있는 상품의 성질상, 당연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to processing, use, maintenance and care of Products.

제14조 소유권 및 위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에 의거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계약품의 손실 또는 손해의 모든 위험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적을 위해 운송업자에게 인도했을 때에 이전된다. 계약품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 및 권리는 매도인이 구매가격의 전액 지급을 수령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第14条 所有権及び危険

売り手と買い手の間に別途合意のない限り、本契約に基づき売り手が買い手に販売する契約品の損失又は損害のすべての危険は、売り手が買い手への船積みのために運送業者に引渡したときに移転するものとする。契約品についての売り手の所有権及び権利は、売り手が購入価格の全額の支払いを受領した時点で買い手に移転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14. Title and Risk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Seller and Buyer, all risks of loss or damage to Products to be sold by Seller to Buyer under this Agreement shall pass to buyer when delivered by Seller to a carrier for shipment to Buyer. Seller's ownership of title to Products shall pass to Buyer upon its receipt of full payment of purchase price.

제14조

소유권 및 위험
위험 이전 및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도 인코텀즈의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다(특약사항임).

제15조 보험

개개의 계약이 CIF 또는 C&I조건인 경우,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CIF 금액의 110%가 매도인에 의해 부보된다. CIF 금액의 110%가 넘는 보험 전보의 추가보험료는 요구를 받을 경우에 매수인이 부담하며, 신용장에 상응하게 명시되는 인보이스 금액에 추가된다.

第15条 保険

個々の契約がC I F又はC & I条件の場合、別途書面による合意がない限り、C I F金額の110%が売り手により付保されるものとする。C I F金額の110%を超える保険填補の追加保険料は、要求される場合、買い手が負担し、信用状に相応に明記されるインボイス金額に追加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15. Insurance

In the event of the individual contract being on CIF or C&I terms, one hundred ten percent (110%) of CIF amount shall be insured by Seller, unless otherwise agreed to in writing. Any additional premium for insurance coverage over one hundred ten percent (110%) of CIF amount, if so required, shall be borne by Buyer and shall be added to the invoice amount, for which the letter of credit shall stipulate accordingly.

제16조 보증

1. 매도인은 계약품이 계약품 선적일로부터 ()개월간 마무리 및 재료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2. 서비스 또는 대체 부품은 수령 후 ()일간 또는 도착 후 ()일간 중 빠른 기간, 재료 및 마무리

제15조 보험

해상보험 규정이지만, 일반적인 것이다.

제16조 보증

계약품의 보증기간과 교환부품 등의 보증기간을 나누는 것은 놓치기 쉽지만 의미가 있다.

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第16条 保証

1. 売り手は、契約品が、契約品の船積日から ()ヵ月間、仕上げ及び材料に瑕疵がないことを保証する。

2. サービス又は代替部品は、受領後 ()日間又は到着後 ()日間のいずれかの早い方の期間、材料及び仕上げに瑕疵がないことを保証する。

Article 16. Warranty

Seller warrants that Products shall be free from defects in workmanship and materials for () months from the date of shipment of Products. Service or replacement parts are warranted to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for () days after acceptance or () days after arrival, whichever occurs first.

제17조 클레임

위 보증에 따른 클레임은 해당 클레임이 이루어진 계약품에 관한 하자를 매수인이 발견한 일자 이후 ()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하자가 있는 계약품의 대체 권리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된 매도인에게 돌아가는 위반을 제외하며, 매도인의 본 보증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를 구성한다.

第17条 クレーム

上記の保証に従ったクレームは、当該クレームが行われる契約品に関する瑕疵を買い手が発見した日付の後 ()日以内に売り手に提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瑕疵ある契約品の代替の権利は、重大な過失を証明された売り手に帰する違反を除き、売り手

제17조 클레임

1. 하자 발견일을 기준으로 한 클레임제기기한 설정은 보증을 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2. 뒷문장도 보증 실행을 한정하고 있다.

による本保証の違反に対する買い手の唯一の救済を構成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17. Claim

Any claim pursuant to the above warranty must presented to Seller no later than () days after the date of Buyer's finding defects relating to Products as to which such claim is made. The right to replacement of any defective Products shall constitute Buyer's sole remedy for breach by Seller of this warranty except for any such breach resulting from Seller proven gross negligence.

제18조 특허 등

제3자의 특허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어떤 당사자도 해당 사항에 의거하거나 이를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그 성질 및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클레임도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클레임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그 당사자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이익의 상실이나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第18条 特許等

第三者の特許又はその他の工業所有権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本契約のいずれの当事者も、当該事項に基づき又はこれを理由として相手方当事者に対してその性質及び種類を問わずいかなるクレームも為さないものとし、かかるクレームは、当該事項がなければその当事者が被ることのなかった利益の喪失若しくは損害を含むがこれに限定されない。

제18조 특허 등
언뜻 평등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도인을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다.

Article 18. Patent, etc.

With respect to the matter involving patent or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 of third party, either of the parties hereto shall not make any claim of whatever nature or kind against the other party upon the basis or ground of any such matt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such losses of profits or other damages as such party would not have suffered if there has been no such matter.

제19조 책임의 제한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기대이익의 손실에 대한 손해 및 용역중단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특별하거나 결과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第19条 責任の制限

いかなる場合も売り手は、期待利益の損失に対する損害及び役務中断に対する買い手の請求を含むが、それに限定されない、特別な又は結果的な損害に対し責任を負わないものとする。

Article 19.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expected revenue and claims of Buyer for service interruption.

제20조 비밀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의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판매방침, 관련 기술정보 및 기타 사업

제19조 책임 제한
매도인의 책임범위(보증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배상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20조 비밀
간략하고 일반적인 규정이다.

비밀을 어떠한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第20条 秘密

売り手と買い手は、本契約による取引を通じて知った相手方当事者の販売方針、関連技術情報及びその他の事業秘密を、いかなる第三者にも洩らさないものとする。

Article 20. Secret

Seller and Buyer shall not divulge the sales policy, relative technical information and other business secrets of the other party, which have become known through the transaction hereunder, to any third party

제21조 선전

매수인은 자기 비용으로 계약지역을 통해 계약품을 효과적으로 선전한다. 선전 문헌, 포스터, 사진 또는 다른 광고자료 작성 시에 매수인은 즉시 10부를 항공편으로 매도인에게 송부한다.

第21条 宣伝

買い手は、自己の費用で、契約地域を通じて契約品を効果的に宣伝するものとする。宣伝文献、ポスター、写真又は他の広告資料の作成時に、買い手は、直ちにそれを10部、航空便で売り手に送付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21. Advertising

Buyer at his own cost shall effectively advertise Products throughout the Territory. Upon the production of any advertising literature, posters, photographs or other publicity materials, Buyer shall forthwith send ten (10) copies thereof by airmail to Seller.

제21조 선전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전 활동을 알아 두면 결국에는 의미가 있다.

제22조 종료

1. 파산 등

어떤 본 계약당사자도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종료 취지를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a) 상대방 당사자의 파산 또는 지급 불능

b) 상대방 당사자의 자발적인 청산 또는 강제 청산

2. 최저수량 미달성

매수인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각 1년 말에 본 계약 제6조가 규정한 최저 수량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그 취지를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매수인이 본 계약 제26조에서 열거한 이유로 최저 수량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 미이행

어떤 본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규정과 관련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치유를 요구하는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을 치유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취지를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第22条 終了

1. 破産等

いずれの本契約当事者も、下記のいずれかの理由により、終了の旨を書面で通知することによって、本契約を直ちに終了することができる。

a) 相手方当事者の破産又は支払不能

b) 相手方当事者の自発清算又は強制清算

2. 最低数量不達成

買い手がいかなる理由によっても、各1年の末に本契約第6条に規定する最低数量を達成しなかつ

제22조 종료

1. 제1항과 제3항은 일반적인 규정이다.

2. 제3항은 매도인의 거래기회의 상실을 방어하는 규정이다.

た場合、売り手は、書面でその旨を通知することによって、本契約を直ちに終了することができる。買い手が本契約第26条に掲げる理由により最低数量を達成しなかった場合、契約違反とならないものとするが、売り手は、本契約の規定により、本契約を終了することができる。

3. 不履行

いずれかの本契約当事者が、本契約の規定に関して債務不履行を犯し、相手方当事者からの債務不履行の治癒を求める通知を受領してから30日以内に債務不履行を治癒しない場合、相手方当事者は、書面でその旨を通知することによって、本契約を終了することができる。

Article 22. Termination

1. Bankruptcy, etc

Either party hereto may forthwith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by giving a written notice thereof. Bankruptcy or insolvency of the other party. Voluntary or compulsory liquidation of the other party.

2. Failure to Attain Minimum Quantities

In case Buyer has failed to attain the minimum quantities at the end of each one year period as prescribed under Article 6 hereof for any reason whatsoever Seller may forthwith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a written notice thereof. In case Buyer has failed to attain the minimum quantities for the reasons mentioned under Article 26 hereof, it shall not constitute a breach, but Selle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s provided herein.

3. Default

In case either party hereto defaults in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the default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ce given by the other party requesting to cure the default,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a written notice thereof.

제23조 통지

본 계약에 의거한 통지는 발신 시점에 그 당사자의 등기영업소에게 부여된 당사자를 수신인으로 하는 요금 선불 등기우편서신으로 송부되며, 이와 같이 송부된 통지는 우편송부의 일반적인 코스로 목적지에 도달할 것으로 예정되는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第23条 通知

本契約に基づく通知は、発信時点のその当事者の登記営業所に与えられた当事者を名宛人とする料金前払いの書留郵便書信で送付されるものとし、このようにじて送付された通知は、郵送の通常のコースで、それが目的地へ到達すると予定される日に到達したとみな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23. Notice

Any notice under this Agreement may be given by sending the notice prepaid registered mail addressed to the party to whom notice is to be given at the party's registered office at that time and any notice so s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on the date upon which, in ordinary course of the post, it would have reached its destination.

제23조 통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절충한 규정이다.

제24조 중재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거해 우호적이고 신속히 해결되며, 이에 실패한 경우, 그 안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되며, 중재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第24条 仲裁

本契約より発生するあらゆる紛争は、本契約当事者間の協議に基づき、友好的且つ迅速に解決されるものとするが、それに失敗した場合、その案件は大韓商事仲裁院の規則に従って、ソウルにて仲裁により解決されるものとし、仲裁判断は、最終的なものであり、且つ両当事者を拘束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24. Arbitration

Any and all disputes arising from this Agreement shall be amicably and promptly settled upon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hereto, but, in case of failure, the matter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제25조 권리 포기

어느 당사자가 어떠한 때라도 본 계약의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위 규정이나 권리 또는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의 포기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을 개정하는 본 계약의 양 당사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는 양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증서로만 개정

제24조 중재

한국측 당사자가 첫 번째로 제안해야 할 조문이다.

제25조 권리 포기

일반적인 규정이다.

할 수 있다.

第25条 権利放棄

いずれかの当事者がいかなる時においても本契約の規定を適切に履行しないこと、又は本契約の権利を行使しないことは、これらの又は本契約のいかなる規定の放棄ともみなされないものとする。本契約は、本契約を改訂する本契約の両当事者の意思を特に確認する同人等により署名された書面の証書によってのみ改訂することができる。

Article 25. Waiver

The failure of either party at any time to properly enforce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o exercise any rights herein shall not be considered a waiver thereof or any of the provisions hereof.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only by an instrument in writing signed by both parties hereto specifically acknowledging their intent to modify the same.

제26조 면책 지체

매도인은 본 계약 및/또는 개개 계약에 의거한 의무의 이행 지체나 불이행으로부터 해당 지체가 전쟁(선전포고 유무를 불문함), 혁명, 폭동, 파업, 노동분쟁, 화재, 홍수, 태풍, 해상에서의 멸실이나 사고, 정부의 요구, 자재 및 운송설비 확보 불능, 운송업자의 행위나 부작위 또는 매도인의 충분한 성의로도 수행할 수 없는 지배를 초월한 기타 사유로 인해 야기된 경우에 면책된다. 양 당사자는 기타 구제와 함께 면책된 지체가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면책된 지체기간에 비례해 본 계약을 정지한 것으로 취급하고 수행을 유예한다.

第26条 免責遅滞

제26조 면책 지체 불가항력조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売り手は、本契約（及び／又は）個々の契約に基づく義務の履行遅滞又は不履行から、当該遅滞が戦争（宣戦布告のあるなしを問わず）、革命、暴動、ストライキ、労働紛争、火災、洪水、台風、海上での滅失若しくは事故、政府の要求、資材及び輸送設備の確保不能、輸送業者の行為若しくは不作为、又は売り手のその十分な誠意を以ってしても遂行できない支配を超えたその他の事由によって引起こされた場合、免責されるものとする。両当事者は、その他の救済に加えて、免責された遅滞が30日以上続く場合、免責された遅滞の期間に比例して本契約を停止したものとして取扱い、遂行を猶予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26. Excused Delay

Seller shall be excused from delay of failure in performance of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or individual contracts, if such delay is caused by wars (declared or undeclared), revolution, riot, strike, labor dispute, fire, flood, typhoon, peril or accident at sea, governmental requirement, inability to secure material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ct or omission of carriers, and other causes beyond its control which cannot be overcome by its due diligence. Both parties shall, in addition to other remedies, treat this Agreement as suspended and reduce any commitment in proportion to the duration of the excused delay if an excused delay continues for more than thirty (30) days.

제27조 양도

본 계약당사자 모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본 계약에 의거한 어떠한 의무도 인수하게 할 수 없으며, 단 어떤 당사자도 흡수 합병 또는 신설 합병하는 회사에 대해서나 본 계약에 의거한 이행 또는 그 약속에 사용하는 자산을 실질상 전부 매각하는 회사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의무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승계 회사가 본 계약에 의거한 양도당사자의 의무 전부를 인수하는 동시에, 양도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거한 의무에서 면책되며, 승계회사가 양도당사자 대신 본 계약당사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第27条 譲渡

本契約の当事者のいずれも、相手方当事者の同意なくして、本契約に基づくいかなる権利をも譲渡し、又は本契約に基づくいかなる義務をも引受け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が、但し、いずれの当事者も、吸収合併若しくは新設合併する会社に対し、又は本契約に基づく履行若しくはその約束に使用する資産を実質上全部売却する会社に対し、当該権利を譲渡し、義務を引受けさせることができる。承継会社が、本契約に基づく譲渡当事者の義務の全部を引受けると同時に、譲渡当事者は、本契約に基づく義務から免がれ、承継会社が譲渡当事者に代わり本契約当事者として入替わるものとする。

Article 27. Assignment

Neither of the parties hereto may,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ssign any of its rights nor delegate any of its duties hereunder, provided, however, that either party may assign such rights and delegate such duties to a

제27조 양도

1.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2. 합병의 경우에도 양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에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corporation with which it merges or consolidates or to which it sells substantially all of its assets used in performance or its undertaking hereunder. Upon the assumption by the successor corporation of all of the assigning party's obligations hereunder, the assigning party shall be released from its obligation hereunder and the successor corporation shall be substituted as a party heretoin the place and instead of the assigning party.

제28조 무역조건

본 계약이 규정한 모든 무역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최신 인코텀즈에 따라 해석된다.

第28条 貿易条件

本契約に規定するすべての貿易条件は、国際商業会議所の最新のインコタームズに従って解釈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28. Trade Terms

All trade terms provid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hit the latest Incoterm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제29조 준거법

본 계약의 효력, 해석 및 이행은 () 법에 의해 지배되며, 동법에 따라 해석된다.

第29条 準拠法

本契約の効力、解釈及び履行は、() 法により支配され、同法に従い解釈されるものとする。

제28조 무역조건

국제적인 무역조건은 인코텀즈만이 아닌 점에 주의한다.

제29조 준거법

1. 준거법의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고 있는 법률보다는 바로 조사할 수 있는 법

る。

Article 29. Governing Law

The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

제30조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구두와 서면, 명시와 묵시를 불문하고 본 계약 작성 전에 당사자, 그 임원, 이사 또는 직원과 본 계약의 주제에 대해 체결된 어떠한 형식 또는 성격의 모든 사전 합의, 이해사항, 협정, 약속, 표시, 보증 및/또는 계약을 대체한다. 본 계약당사자 모두 상대방 당사자의 대표자에 의해 부여된 구두 표시 또는 구두 정보에 의거하지 않았다. 본 계약은 승낙을 본 계약이 규정한 제반 조건에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것이며, 매수인이 신청하는 추가적 또는 다른 종류의 제반 조건은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가 없으면 거절된다.

第30条 完全なる合意

本契約は、口頭か書面か、明示か黙示かを問わず、本契約の作成前に当事者、その役員、取締役又は従業員の間で、本契約の主題について、締結されたいかなる形式又は性格のすべての事前合意、了解事項、協定、約束、表示、保証(及び/又は)契約に取って代わるものとする。本契約当事者のいずれも、相手方当事者の代表者により与えられた口頭の表示又は口頭の情報に依拠しなかった。本契約は、承諾を本契約に規定する諸条件に明示的に限定するものであり、買い手が申込む追加的又は別種の諸条件は、書面で明示的に同意がなされない限り拒絶される。

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준거법을 알고 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0조 완전한 합의

1. 이러한 종류의 조문으로서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2. 영미법권에는 구두증거법칙(Parol Evidence Rules)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Article 30.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supersede any and all prior agreements, understandings, arrangements, promises,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or any contract of any for or nature whatsoever, whether oral or in writing and whether explicit or implicit, which may have been entered into prior to the execution hereof between the parties, their officers, directors, or employees as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Neither of the parties hereto has relied upon any oral representation or oral information given to in by representative of the other party. This Agreement expressly limits acceptance to the conditions proposed by Buyer are rejected unless expressly assented to in writing.

위의 증빙으로서 본 계약당사자는 정당하게 수권된 임원 또는 대표자가 모두에 기재된 일자로 본 계약에 서명 날인하였다.

上記の証拠として、本契約当事者は、その正當に授權された役員又は代表者によつて、冒頭に記載された日付けで、本契約に署名及び捺印させた。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signed and sealed by their duly authorized office or representative as of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매도인 :
売り手 :
Seller:

매수인 :
買い手 :
Buyer:

5. 계속적 매매계약서 (계약서 표준례)

Continuous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계속적매매계약서
継続的売買契約書

This Agreement, entered into this
day of _____, 19 _____ by and between:

_____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_____

_____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of business at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ler”)
and:

_____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_____

_____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of business at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yer”)

본 계약은 201①년②월③일, ④_____법에 의거해 설립
되어 현존하는 법인으로, 그 주요 영업소를 ⑤_____에 둔 ⑥_____ (본 계약에서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⑦_____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현존하는 법인으로, 그 주요 영업소를 ⑧_____에 둔 ⑨_____ (본 계약에서 이하, ‘매수인’라 한다) 간에 체결되어,

本契約は201①年②月③日、④_____法に基づいて設立
され現存する法人で、その主たる営業所を⑤_____に有する⑥_____本契約中にて以下「売り手」

[사용법]

서 두

① 년(숫자)

② 월(숫자)

③ 일(숫자)

④ 매도인의 회사설

립준거법명

⑤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

⑥ 매도인의 회사명

⑦ 매수인의 회사설

립준거법명

⑧ 매수인의 본점소

재지

⑨ 매수인의 회사명

と称する) と、⑦_____法に基づいて設立され現存
する法人で、その主たる営業所を⑧_____に有
する⑨_____ (本契約中にて以下「買い手」と
称する) との間で締結され、

WITNESSETH THAT: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以下のことを証する。

WHEREAS, ⑩_____

NOW, THEREFORE, it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s follows:

이에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よってここに、当事者間で以下のとおり合意さ
れた。

Article 1. Products

The object product covered by this Agreement
refers to the which Buyer has requested Seller
to sell and which Buyer shall purchase
(hereinafter called “Product”)

제1조 계약품

본 계약의 대상 제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판매를
요구하고 매수인이 구매하는 ⑪_____ (본 계약에서
이하 ‘계약품’이라 한다)를 말한다.

第1条 契約品

本契約にカバーされる対象製品は、買い手が売
り手に販売することを要求し、買い手が購入す
る⑪_____ (本契約中にて以下「契約品」と称

전 문

⑩ 계약당사자의
진술 사항

제1조 계약품

⑪ 계약품의 표시
◎ 계약품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
가 필요할 경우,
첨부서를 붙여
그 첨부서에 기
재한다(이 경우,
제2항을 두어
그 취지를 규정
한다.)

する) を言う。

Article 2. Continuous Sales

Seller shall continuously sell Buyer Products manufactured by Seller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stipulated, provided that each model of Products transacted from time to time shall be separately specified in writing by the parties hereto.

제2조 계속적 매매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아래에 규정하는 제반 조건에 의거해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제조한 계약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며, 단 수시로 거래되는 계약품의 각 모델은 별도 당사자가 서면으로 특정한다.

第2条 継続的売買

売り手は、本契約中にて以下に規定する諸条件に基づき、買い手に、売り手が製造した契約品を継続的に販売するものとするが、但し、随時取引される契約品の各モデルは、別途当事者により書面で特定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3. Term and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and in force for a period of _____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appearing at the first above written page upon the signing of both parties. When either of two parties hereto intend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 notice in writing shall be given to the other party one hundred and twenty (120) days before the date of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no notice is given, this Agreement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제2조 계속적 매매

◎ 계속적 매매의 합의 선언이다.

◎ 형식 등의 표시는 제4조의 각 계약서에 표시될 것이다.

a further one (1) year. The same procedure shall apply for subsequent renewals.

제3조 기간 및 종료

본 계약은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첫 페이지에 기재된 기일로부터 기산해 ⑫____년간 유효하며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의 두 당사자 중 하나가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본 계약 만료일 120일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통지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추가로 1년간 자동 갱신된다. 동일한 절차는 이후 갱신에 적용된다.

第3条 期間および終了

本契約は、当事者の署名と同時に、冒頭ページに記載された期日から起算して⑫____年間有効とし、効力を有するものとする、本契約の二当事者のいずれかが、本契約を解除しようとするときは、本契約の満了日の120日前までに、相手方当事者へ書面で通知するものとする。通知されない場合、本契約は、更に1年間自動的に更新されるものとする。同様な手続きは、その後の更新に適用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s 4. Purchase Order

Each individual contrac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but such contract shall be, on the basis of Buyer's purchase order release, concluded and carried out by Seller's sales note to contract form, the current version of which is attached hereto as Exhibit 1, which shall set forth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hereto except those stipulated in this Agreement, or by such other conditions as may be notified and added thereto or substituted

제3조 기간 및 종료

⑫ 원 계약 기간의 연수

◎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herefor by Seller and confirmed by Buyer in writing from time to tim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제4조 구매 주문

본 계약에 의거한 각각의 계약은 해당 계약이 매수인의 구매주문 출하의뢰에 의거해 체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르며, 또한 부속서 I로서 본 계약에 그 현행본이 첨부되고 본 계약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반 조건,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매도인의 매도약서 또는 계약서식에 의하거나 본 계약기간 중에 수시로 매도인이 통지하고 이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매수인이 확인하는 기타 조건에 의해 수행된다.

第4条 購入注文

本契約に基づく個々の契約は、当該契約が買い手の購入注文出荷依頼に基づき締結される場合を除き、本契約に従うものとし、並びに付属書 I として本契約のその現行版が添付され、本契約に規定するものを除き、諸条件、当事者の権利及び義務を定める売り手の売約書若しくは契約書式により、又は本契約期間中随時書面で売り手が通知し、それらに追加し、若しくはそれらに代えて買い手が確認するその他の条件により遂行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5. Quantities

1.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both the parties hereto shall make their best efforts to transact the following quantities of Products hereunder:

제 5조 수량

1.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양 당사자들은 아래 수

제4조 구매 주문

◎ 각 계약서의 경우에도 이 시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제5조 수량

⑬ 매매년도(또는 기간)

량의 본 계약에 의거한 계약품을 거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第5条 数量

1. 本契約期間中、本契約両党自社は、以下の数量の本契約に基づく契約品を取引するよう最善の努力をするものとする。

- a) _____
- b) _____
- c) _____

2. Should there be a remarkable change in the market conditions, both the parties hereto may negotiate a change of the quantities set forth above.

2. 상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계약 양 당사자는 아래에 규정한 수량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2. 市況に著しい変動がある場合、本契約両当事者は、上に定める数量の変更を協議することができる。

Article 6. Price

Price of Products delivered from Seller to Buyer shall be decided upon in each individual contract.

제6조 가격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계약품의 가격은 개개의 계약으로 결정된다.

第6条 価格

売り手から買い手に引渡される契約品の価格は、個々の契約で決定されるものとする。

⑭ 각 기간의 매매 수량

◎ 위 수량은 양 당사자들의 최선 노력 목표이다.

제6조 가격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기준을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rticle 7. Payment

Payment shall be made by Buyer, against Seller's sight draft in _____ currency, under a confirmed, irrevocable and without-recourse letter of credit of a prime bank in favour of Seller, available for "about" the amount and "about" the quantity of sale, and valid at least for fifteen (15) days after the latest date of shipment, to be established in full within _____

days after executing the individual contract. Such letter of credit shall permit partial shipments and transshipments, and shall provide for any freight increase, war risk premium, consular fee, etc., to be added in invoice, if necessary.

제7조 지급

지급은 각 계약 체결 후 ⑮ _____ 이내에 완전하게 개설되며, 선적 최종일 후 적어도 15일간 유효하며, 판매와 관련하여 '대략의 금액 및 '대략'의 수량으로 유효한 매도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일류은행의 확인부 취소불능으로 상환이 없는 신용장에 의거해 ⑯ _____ 통화로, 매도인의 일람불 어음에 대해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당 신용장은 분할 선적 및 환적을 허용하며, 본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필요할 경우 인보이스에 추가되어야 할 운임 증가, 전쟁위험할증보험료, 영사사증료 등을 포함한다.

第7条 支払い

支払いは、個々の契約締結後⑮ _____以内に完全に開設され、船積みの最終日後少なくとも15日間有効で、販売に関して「およそ」の金額及び「およそ」の数量で有効な、売り手を

受取人とする一流銀行の確認付取消不能で償還のない信用状に基づいて⑯ _____通貨で、売り手の一覽払手形に対し、買い手により行われるものとする。当該信用状は、分割船積み及び積替えを許容するものとし、本契約中に規定のとおり必要な場合、インボイスに追加されるべき運賃増加、戦争危険割増保険料、領事査証料等を含むものとする。

Article 8. Shipment

1. Seller shall manufacture, procure and supply Products to Buyer from time to time. The delivery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sale of Products shall be _____ unde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 Once Buyer has established the first letter of credit referred to under Article 7 hereof, Seller shall timely complete all preparation for cargo readiness, and within the time fram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ake care of shipping Products.
3. As soon as possible after shipment, Seller shall submit Buyer a shipping advice and shipping documents so as to enable Buyer to be ready for unloading Products.

제8조 선적

1. 매도인은 계약품을 제조, 조달하고 수시로 매수인에게 공급한다. 계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도 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무역조건기준(인코텀즈)에 의거한 ⑰ _____로 한다.
2. 매수인이 본 계약 제7조에서 말하는 최초 신용장을 개설했을 경우 즉시 매도인은 모든 적하 준비를 적시

제7조

- ⑮ L/C 개설기한일수
 ◎ "about"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백분율을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⑯ 지급통화명

제8조 선적

- ⑰ 무역조건명
 - 예를 들어 'CIF(도쿄항)' (CIF Tokyo) 등으로 기재한다.

에 완료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기한 내에 계약품 선적을 처리한다.

3. 선적 후에 가급적 빨리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품의 양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선적 통지 및 선적 서류를 매수인에게 송부한다.

第8条 船積み

1. 売り手は、契約品を製造し、調達し、且つ随時買い手に供給するものとする。契約品を販売するため引渡条件は、国際商業会議所の国際貿易条件基準（インコタームズ）に基づく⑰_____とする。

2. 買い手が本契約第7条にいう最初の信用状を開出した場合直ちに、売り手は、すべての積荷準備を適時に完了し、当事者間で合意した期限内に契約品の船積みを処理するものとする。

3. 船積後できる限り早く、売り手は、買い手が契約品の陸揚げの準備をできるように、船積通知及び船積書類を買い手に送付するものとする。

Articles 9. Packing and Marking

Packing and marking of Product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Seller's standard export packing procedures. The necessary instructions for shipping mark shall be given by Buyer to Seller at the time of purchase order release.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clearly marked on Products and/ or packing.

제9조 포장 및 마킹

본 계약품의 포장 및 마킹은 매도인의 표준수출포장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쉬핑 마크에 필요한 지시는 구매주문서 발행 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한다. 원산지국은 계약품 및/또는 포장 상에 명확하게 마킹한

◎ 선적시기 등은 각 계약서에 규정된다.

◎ 좌측 내용은 확인 기재사항이다.

제9조 포장 및 마킹

◎ 인코텀즈 상의 포장은 육상 포장이 상정되어 있다고 한다.

다.

第9条 梱包及びマーキング

本契約品の梱包及びマーキングは、売り手の標準輸出梱包手続きに従って行われるものとする。 SHIPPING・マークに必要な指示は、購入注文書の交付時に、買い手が売り手に与えるものとする。原産地国は、契約品（及び／又は）梱包上に明確にマークを付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10. Service

Buyer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ervice of Products delivered under this Agreement. Should Buyer require service assistanc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Seller shall provide such service in at the following rates:

제10조 서비스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의거해 인도된 계약품의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본 계약기간 중에 매수인이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매도인은 ⑱_____에 있어 아래 요금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第10条 サービス

買い手は、本契約に基づき引渡された契約品のサービスについて、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本契約の期間中に、買い手がサービスについて援助を要請する場合、売り手は、⑱_____において下記の料金で当該サービス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

- a) ⑲_____ : ⑳_____
- b) ⑲_____ : ⑳_____
- c) ⑲_____ : ⑳_____

제10조 서비스

⑱ 계약품 수입설치국가명

⑲ 서비스 내용
- 예를 들어 설치작업 (Installation Works) 등을 표시한다.

⑳ 단가
- 예를 들어 1인일(人日)당 50,000일본엔화(50,000 Japanese Yen per man day) 등을 표시한다.

◎ 수입국에서 비교적 중요하고 까다로운 작업이 필요할 때 이 규정이 유용하다.

Article 11. Specifications and Inspection

All Products to be supplied by Seller to Buyer hereunder shall comply with the relevant quality specifications established by Seller and approved by Buyer. Seller shall inspect Products prior to shipment in accordance with its established quality control procedures.

제11조 규격 및 검사

본 계약에 의거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계약품은 매도인이 확립하고 매수인이 승인하는 관련 품질규격과 일치한다. 매도인은 그 확립된 품질 관리절차에 따라 선적 전에 계약품을 검사한다.

第11条 規格及び検査

本契約に基づき売手が買い手に供給するすべての契約品は、売手が確立し、買い手が承認する関連品質規格に合致するものとする。売手は、その確立した品質管理手続きに従って船積前に契約品を検査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12. Warranty

Seller warrants that Products are free from any defects of design, material and workmanship and conform to its specifications. Liability under this warranty is limited to, at Seller's option, ⑫_____, replacing or giving credit for the purchase price of portion or part which proves to be defective, provided that Buyer has given reasonably prompt notice of the defect and an opportunity of inspection for the defective Products.

제11조 규격 및 검사

◎ 원래 매도인의 (조달)제품일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시한 규격이 중심이 된다.

제12조 보증

매도인은 계약품이 설계, 재료 및 완성에 하자가 없고, 계약품 규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본 보증에 의거한 책임은 매도인의 선택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명된 부분에 대한 ⑫_____, 교환 또는 구입대금의 여신으로 한정되며, 단 매수인은 하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통지 및 하자가 있는 계약품의 검사 기회를 부여한다.

第12条 保証

売り手は、契約品が設計、材料及び仕上げに瑕疵がなく、契約品の規格に合致することを保証する。本保証に基づく責任は、売り手の選択で瑕疵があると判明した部分に対する⑫_____, 取替え又は購入代金の与信に限定されるが、但し、買い手は、瑕疵についての合理的で速やかな通知及び瑕疵ある契約品の検査の機会を与えるものとする。

Article 13. Claim

Buyer is entitled to make a survey of quantity and quality of Products at the port of discharge and to lodge first claim by cable with Seller as soon as possible, if Buyer finds any defect in Products. Within _____days after the arrival of Products at the said port Buyer shall make a formal claim with supporting documents.

If failing to comply with the above, no claim of Buyer shall be entertained by Seller. If complied with the above, then Buyer's claim must be settled by the Seller at the latest within days from the date of acknowledgement of Buyer's claim.

제12조 보증

⑫ 변상방법

- 예를 들어 수리(repairing) 등으로 기재한다.

◎ 매도인이 보증 실행방법을 한정한다.

제13조 클레임

매수인은 양하항에서 계약품의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할 수 있고, 매수인이 계약품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최초 클레임을 전신으로 매도인에게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기재한 항에 계약품이 도착한 날 이후 ⑫_____ 일 이내에 매수인은 증거서류와 함께 정식 클레임을 제기한다. 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수인의 클레임은 매도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위 내용에 따를 경우에는 매수인의 클레임은 매수인의 클레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늦어도 ⑬_____ 일 이내에 매도인이 해결해야 한다.

第13条 クレーム

買い手は、積降し港で契約品の数量及び品質を検査することができ、買い手が契約品に瑕疵を発見した場合は、できる限り速やかに、最初のクレームをケーブルで売り手に申立てることができる。既述の港に契約品の到着日後⑫_____以内に、買い手は、証拠書類と共に、正式なクレームを行うものとする。上記に従わない場合、買い手のクレームは、売り手に受入れられないものとする。上記に従った場合は、買い手のクレームは、買い手のクレームを知った日から遅くとも⑬_____以内に売り手により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Article 14. Patent

Seller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ny infringement or unauthorized use with regard to patent, utility model, trademark, design, copyright or any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 of a third party.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e construed to be transfer of any patent, utility model, trademark, design,

제13조 클레임

⑫ 정식 클레임 제기할일수

⑬ 클레임 해결일수

◎ 위⑫및⑬은 계약품 성질에 따라 타당한 일수를 정한다.

copyright or any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 contained in Products, and all such rights are to be reserved to true and lawful owners thereof. In case any dispute or claim arises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right or rights, Seller is entitled to cancel, and make null and void this Agreement at its discretion and hold itself free from any liability for dispute or claim.

제14조 특허

매도인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침해나 무단 사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는 계약품에 포함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의 양도로 해석되는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아니하며, 모든 해당 권리는 그 진정하고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유보된다. 분쟁 또는 클레임이 위 권리와 관련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자기 재량으로 본 계약을 해제 및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분쟁 또는 클레임에 대해서 스스로를 면책할 수 있다.

第14条 特許

売り手は、特許、実用新案、商標、意匠、著作権若しくはその他の工業所有権に関するいかなる侵害又は無断使用について責任を負わない。本契約中には、契約品に包含される特許、実用新案、商標、意匠、著作権又はその他の工業所有権の譲渡と解釈されるいかなるものも含まれていないものとし、すべての当該権利は、それらの真正且つ合法的所有者に留保されるものとする。紛争又はクレームが上記の権利に関連して発生した場合、売り手は、自己の裁量で本契約を解除及び無効とすることができ、紛争又はクレームに対して自らを免責とすることができ

제14조 특허

◎ 특허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완전히 면책된다고 하였다.

◎ 매도인의 면책 규정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전략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다.

Article 15. Confidentiality

Buyer shall keep in confidence all information including technology relating to Products furnished by Seller, and shall not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or any extension or renewal thereof or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whatsoever, divulge to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other than to its own employees who may require such information in order to perform Buyer'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y such inform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of Seller.

제15조 비밀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계약품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며, 매도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이유라도 본 계약기간 중이나 그 연장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기간 중이나 본 계약 종료 후 3년간 어떠한 시점에서도 본 계약에 의거한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매수인 측 직원 이외의 어떠한 개인, 회사 및 법인에게도 어떠한 해당 정보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第15条 秘密

買い手は、売り手が提供した契約品に関する技術を含むあらゆる情報の秘密を守るものとし、売り手の事前の書面による承認なくしては、いかなる理由にせよ、本契約の期間中又はその延長若しくは契約更新期間中或いは本契約の終了後3年の間のいかなる時点においても、本契約に基づく買い手の義務を履行するため、当該情報を必要とする買い手側の従

제15조 비밀

◎ 매매계약에서도 상호 비밀정보가 오고 간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을 둔다.

業員以外のいかなる個人、会社及び法人にも、いかなる当該情報も洩らさないものとする。

Article 16. Advertising

Buyer shall engage in suitable advertising and publicity for the sales promotion of Products. Expenses for the said advertising and publicity shall be borne by Buyer, provided that Seller shall, at its sole discretion, furnish Buyer with advertising materials free of charge.

제16조 선전

매수인은 계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선전 및 광고를 한다. 이 선전 및 광고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단 매도인은 독자적인 재량으로 매수인에게 선전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第16条 宣伝

買い手は、契約品の販売促進の適切な宣伝及び広告に従事するものとする。この宣伝及び広告費は、買い手が負担するものとするが、但し、売り手は、その独自の裁量で、買い手に宣伝資料を無料で提供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17. Termination

Seller is entitled to terminate or cancel this Agreement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 a) In the events Buyer shall fail to perform any of the terms or conditions contained herein and such failure shall continue to exist for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written notice of such failure;
- b)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Buyer or in the event a voluntary or involuntary

제16조 선전

◎ 장기계약이므로, 판매촉진의 상호 협조도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petition in bankruptcy is filed by, against or on behalf of Buyer;

- c) In the event Buyer makes a general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or a receiver of trustee is appointed for its business or property; or
- d) In the event Buyer shall fail to perform any of the terms or conditions contained herein by reason of other than or similar to the above a), b) and c).

제17조 종료

매도인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즉시 본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a) 매수인이 본 계약에 규정하는 제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불이행이 서면 통지일 이후 30일간 계속될 경우.
- b) 매수인이 지급불능인 경우나 파산에 관한 임의 또는 강제 제기가 매수인에 의해 매수인에 대해서나 매수인을 대리해 이루어질 경우 또는
- c) 매수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포괄 양도를 하거나 매수인의 영업 또는 재산에 대해 관재인이나 수탁자가 임명될 경우.
- d) 매수인이 위 a), b), c) 이외의 이유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본 계약이 규정한 제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第17条 終了

売り手は、下記事由のいずれかの発生により直ちに本契約を終了又は、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 a) 買い手が、本契約に規定する諸条件のいずれかを履行せず、当該不履行が書面による

제17조 종료

- ◎ 매수인측 입장에 기초한 규정 방법이다.
- ◎ 내용적으로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通知の日の後、30日間継続する場合。

b) 買い手の支払不能の場合、又は破産に関する任意若しくは強制申し立てが、買い手により、買い手に対して、若しくは買い手を代理して、行われる場合、或いは、

c) 買い手が、債権者の利益のための包括譲渡を行い、又は買い手の営業若しくは財産について管財人若しくは受託者が任命される場合。

d) 買い手が、上記 a)、b)、c)、以外の理由、又はこれらに類似の理由で、本契約に規定する諸条件のいずれかを履行しない場合

Article 18. Pending Order

Even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any reason whatsoev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to the order placed before termination, but which is to be performed after such termination.

제18조 미이행 주문

어떠한 이유라도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의 규정은 종료 전에 받은 주문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는 해당 종료 후에 이행되어야 한다.

第18条 未履行注文

いかなる理由によって本契約が終了した後も本契約の規定は、終了前に受けた注文に対して適用されるものとするが、これは、当該終了後に履行されるべきとする。

Article 19. Notice

All notices, summons and communications related to this Agreement shall be addressed by telex or registered letter,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 sent or mailed to the other party at its hereinabove set forth address (or any new

제18조 미이행 주문
◎ 확인 규정이다.

address that would be noticed in the same way) and in English.

제19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지, 소환장 및 연락은 텔렉스 또는 배달 증명부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본 계약 중 앞서 규정한 주소(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된 새 주소)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영어로 송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된다.

第19条 通知

本契約に関連するすべての通知、召喚状及び連絡は、テレックス又は配達証明付書留郵便で差向けられ、本契約中の上記で定める住所(又は、同一の方法で通知された新住所)の相手方当事者へ、英語で送付又は郵送されるものとする。

Article 20.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hereto, out of,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㉔,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제20조 중재

본 계약당사자간에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㉔에서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단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第20条 仲裁

제19조 통지

소환장도 열거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규정이다.

제20조 중재

㉔ 중재지
- 가급적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가 좋다.

本契約当事者間で本契約から、関して若しくは関連して生じるすべての紛争、論争又は意見の相違は、大韓商事仲裁院の商事仲裁規則に従い、大韓民国 ㉔ で仲裁により最終的に解決されるものとする。仲裁人の下した仲裁判断は、最終的であり、両当事者を拘束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21. Force majeure

In the event of occurrence of an emergency or contingency of a nature constituting a cause of force majeure to any or all of the parties hereto, with the result that the performance of any of its or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s prevented thereby,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in any way because of any delay in its performance due to such cause. Under this Agreement a force majeure is deemed to be any cause beyond the parties'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rike; lockout; riot; war; accident; failure or breakdown of components necessary to order completion; subcontractor, supplier or customer caused delays; inability to obtain or substantial rise in the price of labor, materials or manufacturing facilities, fire; Act of God; curtailment of or failure to obtain sufficient Governmental body or any instrumentality thereof, whether now existing or hereafter created.

제21조 불가항력

본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해 불가항력의 이유가 되는 성질의 긴급사태 또는 우발사고의

제21조 불가항력
◎ 다소 구체적이지만, 일반적인 규정이다.

발생으로 본 계약에 의거한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이행이 그에 따라 방해를 받는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해당 사유에 기인하는 이행 연체를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 불가항력이란 파업, 사업장 폐쇄, 폭동, 전쟁, 사고, 주문 달성에 필요한 구성품 부족이나 파손, 하청·공급처나 고객이 일으킨 지체, 노동, 자재 또는 제조 설비의 가격으로 취득 불가능 또는 실질적 상승, 화재, 천재지변, 충분한 전기나 다른 에너지의 부족 또는 취득 불가능, 현존하거나 이후에 설립되는 것을 불문하고 관할정부기관이나 그 기관의 유무효를 불문한 명령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당사자의 지배를 초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불가항력으로 간주된다.

第21条 不可抗力

本契約当事者のいずれか若しくはすべてに対して不可抗力の理由となる性質の緊急事態又は偶発事故の発生で、本契約に基づく業務のいずれかの履行がそれによって妨げられる結果を伴う場合、いずれの当事者も当該事由に起因する履行延滞を理由としてはいかなる方法でも責任を負わないものとする。本契約において不可抗力とは、ストライキ、ロックアウト、暴動、戦争、事故、注文の達成に必要な構成品の不足若しくは破損、下請け・供給先若しくは顧客が引起こした遅滞、労働、資材若しくは製造設備の価格における取得不能又は実質的上昇、火災、天変地異、十分な電気若しくは他のエネルギーの不足又は取得不能、現存するか若しくはこれ以後設立されるかを問わない、管轄政府機構又はその機関の、有効若しくは無効を問わない、命令を含むがそれに限定されない当事者の支配を超えた事由がある場合これとみなされる。

Article 22. Assignment

This Agreement and any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hereunder shall not be assigned by either party without a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an assignment is consented to by the other party, this Agreement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and be binding upon the successor or the assignee.

제22조 양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거한 어떠한 권리 및 의무도 양도되지 아니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양도를 동의할 경우, 본 계약은 계승인 또는 양수인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구속한다.

第22条 譲渡

相手方当事者の書面による事前の同意なくして、本契約、並びに本契約に基づくいかなる権利及び義務も、譲渡されないものとする。相手方当事者が譲渡を同意する場合、本契約は、継承人又は譲受人の利益のため効力を生じ、並びに承継人又は譲受人を拘束するものとする。

Article 23.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s to all matters, including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by and under the laws of Korea.

제23조 준거법

본 계약은 효력, 해석 및 이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한국법에 의해 지배된다.

第23条 準拠法

本契約は、効力、解釈及び履行を含むすべての事項について、韓国法によって支配されるもの

제22조 양도

◎ 뒷문장은 확인 규정이다.

제23조 준거법

◎ 한국측 입장에 서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규정이다.

とする。

Article 24. Invalid or unenforceable provision
Should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e invalid or unenforceable, then such provision shall be given no effect and shall be deemed not to be included within the terms of this Agreement, but without invalidating any of the remaining term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to shall then endeavour to replace the invalid or unenforceable provision by a clause which is closest to the contents of the invalid or unenforceable provision.

제24조 무효 또는 강제불가규정

본 계약의 어느 하나의 규정이 무효 또는 강제 불가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본 계약의 잔여 조건의 어떠한 것도 무효가 되지는 아니한다. 이 때 본 계약의 당사자는 그 무효 또는 강제 불가 규정을 그 무효 또는 강제 불가의 규정 내용과 가장 가까운 조항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한다.

第24条 無効又は強制不可規定

本契約のいずれかの規定が無効又は強制不可の場合は、当該規定は、何らの効力も持たないものとし、本契約の条件に含まれないものとなるものも無効になることはない。その際、本契約の当事者は、その無効又は強制不可の規定をその無効な又は強制不可の規定内容に最も近い条項文に置替え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제24조 무효 또는

강제불가규정

◎ 분리가능성 조항
(Separability Clause)의 한 종류이다.

◎ 뒷문장에서 실무적인 배려를 기대하고 있다.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signed and sealed by their duly authorized officer or representative as of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위의 증빙으로서 본 계약당사자는 정당하게 수권된 임원 또는 대표자가 모두에 기재된 일자로 본 계약에 서명 및 날인한다.

上記の証拠として、本契約当事者は、その正当に授權された役員又は代表者によって、冒頭に記載された日付で、本契約に署名及び捺印させた。

Seller:

매도인:

売り手:

Buyer:

매수인:

買い手:

후 문

◎ 일반적인 기재이다.

시·리·즈·목·록

국가	법무법인	저자
중국 I	광장	최광호 중국변호사
러시아·CIS	울촌	이화준 러시아변호사 문형철 변호사
일본	태평양	변희경 변호사 허규현 변호사

변희경 변호사

학 력

1997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0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2001 : 미국 Columbia Law School 미국통상법 전문가과정
2002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 력

2002~2004 : 법무부 법조인력과 등 공익법무관
2005~2008 : 사단법인 한국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사
2005~2009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6~2011.04 :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법인장
2011.05~ : 법무법인(유) 태평양
2011.12~ :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허규현 변호사

학 력

2006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 력

2011~현재 : 법무법인(유) 태평양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인 쇄	2013년 7월
발 행	2013년 7월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편집 및 감수	김종우 검사, 김가연 사무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 화	02) 2110-3661
팩 스	02) 2110-0327
전자우편	ildhd@moj.go.kr
인 쇄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주)
	02) 756-5171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79-01

ISBN

979-11-950690-0-2